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5

- 1.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에 대한 검토 15
- 2.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 24
 - 2-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6
 - 2-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0
 - 2-3.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36
- 3.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 3-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42
 - 3-2.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48

III. 개별 사업 분석 / 51

-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51
- 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56
- 3.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정합성 검토 필요 61
-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수 실적 저조 64
- 5.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정합성 저조 68
- 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71



7.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전문성 제고 필요	73
8.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은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76
9.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바이오가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 필요	81
10.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내용 조정 필요	85
11.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90
1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필요 검토 필요	9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97

[해양수산부]

I. 예산안 개요 / 101

1. 현 황	1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7

II. 주요 현안 분석 / 112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112
1-1. TAC 적용 대상 어종업종 확대의 기반 마련 필요	113
1-2.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 가능성 검토	116
1-3. 총허용어획량 설정배분 및 어획량 조사관리 등 제도운용 개선	117



2.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반영한 계획 수립 등	120
2-1. 어촌·어항법 상 관련 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120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121

III. 개별 사업 분석 / 124

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국비 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24
2.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26
3.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29
4.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유류비 지원 상한액 설정 필요	132
5.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 집행가능성 점검 필요	134
6.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 집행경과 고려 필요 등	136
7.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사업 보급목표 설정 이후 지원 필요	140
8.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 편성체계 조정 필요 등	142
※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144

[농촌진흥청]

I. 예산안 개요 / 147

1. 현 황	14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1



II. 개별 사업 분석 / 153

1.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민간의 참여 확보 방안 모색 필요 153
 2.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157
 3.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와 구분 편성 필요 162
 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재검토 166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은 종자 생산물량 검토 필요 169
 6.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의 적기 사업추진 필요 172
- ※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174

[산림청]

I. 예산안 개요 / 177

1. 현 황 17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2

II. 주요 현안 분석 / 184

1.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등 184
 -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 185
 -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사업방식 보완 검토 필요 189



III. 개별 사업 분석 / 191

1.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적정규모 검토 필요 191
 2.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자리유형별 사업성과,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고용계획 수립
필요 194
 3.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정밀한 수요예측 필요 196
- ※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200

[해양경찰청]

I 예산안 개요 / 203

1. 현 황 20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5

II. 개별 사업 분석 / 207

1. 함정건조 사업 및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207
2. 유도선안전관리강화 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211
3.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현장수요에 맞춘 구조훈련 계획 수립 필요 215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0조 7,84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대비 5,335억원(5.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0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1,13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4,992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2,088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5,622억원, 축산발전기금 8,097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896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78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3억원 등이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423,793	5,260,957	5,260,957	5,696,195	435,238	8.3
-일반회계	7,263	20,130	20,130	20,507	377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57,953	4,776,090	4,776,090	5,113,611	337,521	7.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688	42,932	42,932	42,932	0	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20	21,728	21,728	19,953	△1,775	△8.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060	43	43	0	△43	순감
-양곡관리특별회계	1,010,810	400,034	400,034	499,192	99,158	24.8
기 금	5,102,355	4,990,189	4,990,189	5,088,453	98,264	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82,064	2,173,217	2,173,217	2,208,800	35,583	1.6
-농지관리기금	1,705,168	1,532,296	1,532,296	1,562,193	29,897	2.0
-축산발전기금	921,651	832,058	832,058	809,729	△22,329	△2.7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28	5,255	5,255	45	△5,210	△99.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55,689	332,416	332,416	389,619	57,203	17.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5,684	114,660	114,660	117,780	3,120	2.7
-양곡증권정리기금	1,271	287	287	287	0	0.0
합 계	11,526,148	10,251,146	10,251,146	10,784,648	533,502	5.2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15조 2,990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5,070억원(3.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99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조 5,82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21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65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1,540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5,392억원, 축산발전기금 9,250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26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40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06억원이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231,817	9,475,726	9,575,026	9,997,552	422,526	4.4
-일반회계	644,487	672,731	672,731	699,919	27,188	4.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517,575	5,373,483	5,472,783	6,582,174	1,109,391	20.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447	39,428	39,428	26,876	△12,552	△3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72,155	1,415,250	1,415,250	682,078	△733,172	△51.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1,658,152	1,974,834	1,974,834	2,006,505	31,671	1.6
기 금	5,127,095	5,183,856	5,216,915	5,301,412	84,497	1.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94,233	2,148,272	2,161,119	2,154,022	△7,097	△0.3
-농지관리기금	1,083,237	1,205,708	1,205,708	1,539,243	333,535	27.7
-축산발전기금	929,129	876,307	890,629	924,970	34,341	3.9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559,271	274,871	274,871	22,573	△252,298	△91.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50,621	658,123	664,013	640,012	△24,001	△3.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604	20,575	20,575	20,592	17	0.1
-양곡증권정리기금	-	-	-	-	-	-
합 계	14,358,912	14,659,582	14,791,941	15,298,964	507,023	3.4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3조 4,37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847억원(1.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조 2,47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1,065억원이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263	20,130	20,130	20,507	377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61,563	11,093,251	11,093,251	11,247,736	154,485	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688	42,932	42,932	42,932	0	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20	21,728	21,728	19,953	△1,775	△8.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060	43	43	0	△43	순감
양곡관리특별회계	2,307,087	2,074,834	2,074,834	2,106,505	31,671	1.5
합 계	13,723,681	13,252,918	13,252,918	13,437,633	184,715	1.4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9조 4,83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367억원(△1.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 12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조 6,55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21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1,065억원이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235,556	6,284,175	6,284,175	7,012,322	728,147	1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986,815	9,705,396	9,906,196	9,655,391	△250,805	△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447	39,428	39,428	26,876	△12,552	△3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72,155	1,415,250	1,415,250	682,078	△733,172	△51.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152	2,074,834	2,074,834	2,106,505	31,671	1.5
합 계	18,392,125	19,519,083	19,719,883	19,483,172	△236,711	△1.2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조 3,540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9,697억원(11.6%)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4,808억원, 농지관리기금 3조 2,642원, 축산발전기금 1조 1,235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37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851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16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은 1조 3,603억원이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 ¹⁾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85,223	2,402,524	2,402,524	2,480,783	78,259	3.3
농지관리기금	3,867,966	3,137,496	3,137,496	3,264,188	126,692	4.0
축산발전기금	1,020,898	1,017,078	1,017,078	1,123,500	106,422	10.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603,520	276,039	276,039	23,744	△252,295	△91.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60,831	711,744	711,744	685,069	△26,675	△3.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8,198	409,489	409,489	416,459	6,970	1.7
양곡증권정리기금	508,674	430,011	430,011	1,360,304	930,293	216.3
합 계	9,225,310	8,384,381	8,384,381	9,354,047	969,666	11.6

주: 1. 총계 기준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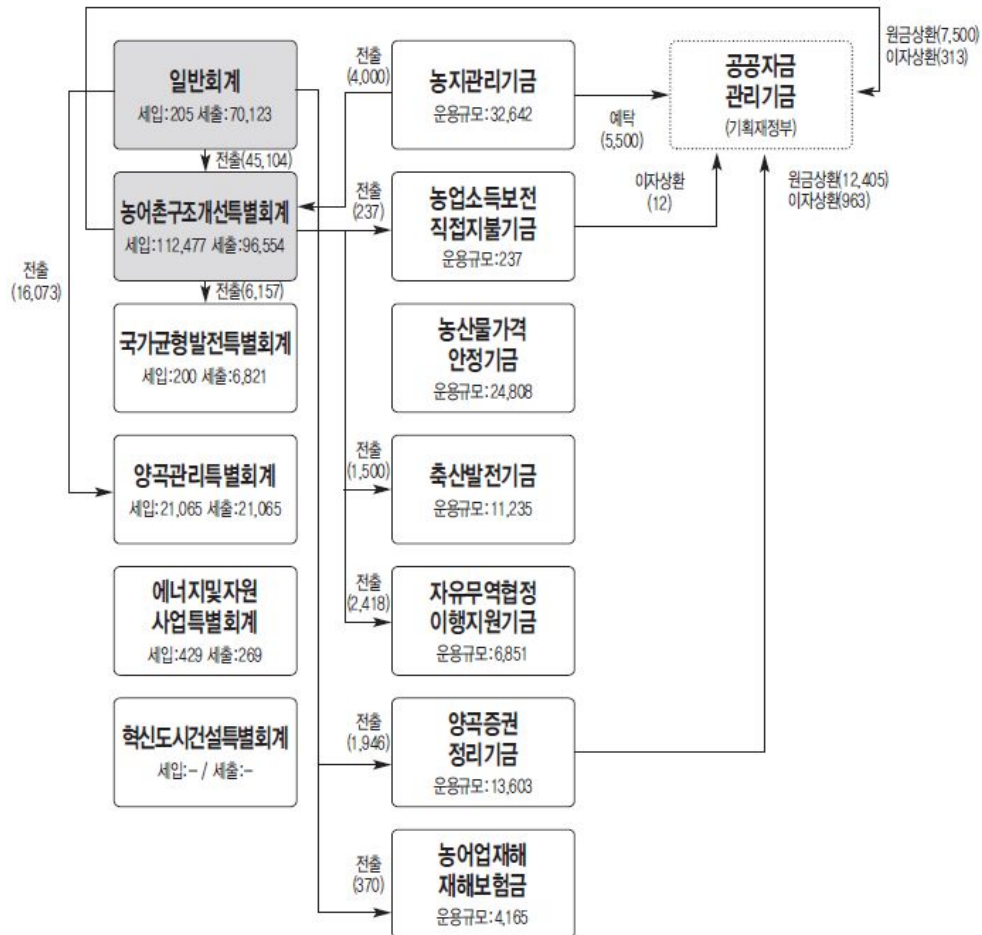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5,104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6,074억원 전출되며,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946억원이 전출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6,157억원이 전출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237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370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500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2,418억원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7,500억원, 예수이자 313억원을 상환한다.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 4,000억원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500억원을 예탁한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2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2,405억원의 예수원금 및 963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 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가격 구분 없이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여 중소농을 배려하고 논·타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위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과 스마트팜 집적화 및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15조 2,990억원으로 2019년(14조 6,596억원) 대비 4.4% 증가하였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시행을 통해 농가소득안정 및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의 구현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률의 심의경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우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기존 사업의 추진경과를 감안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설·운영 지원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및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2019년 혁신밸리 1차지역의 조성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971억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사업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축산물 PLS 도입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위한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중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은 농지원부 정비 및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관리 등 지자체 농지행정 DB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중심의 집단화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축산발전기금 사업 중 축산물수급관리(용자)사업은 계란공판장 출하 촉진 자금지원 및 오리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민간비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 예산안
일반회계 (1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3,76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4개)	대한민국농업박람회	3,250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1,797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630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4,500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300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19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9,060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R&D)	3,500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4,500

	세부사업명	2020 예산안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R&D)	6,000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13,148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R&D)	2,000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	6,000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95
농지관리기금 (2개)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4,199
	농지범용화시범사업	200
축산발전기금 (1개)	축산물수급관리(용자)	30,000
합 계		97,1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구축,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맞춤형농지지원(용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이 있다.

①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구축 사업은 스마트농업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팜 혁신 벨리 데이터 수집체계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은 노지재배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특화단지 기초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③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사업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농촌축제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었다. ④ 맞춤형농지지원(용자) 사업은 2030세대, 청년창업농 등 젊은 농업인의 신규 농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축사 내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예산안 주요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청사시설지원(종자원)	376	376	1,069	693	184.3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7개)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	2,080	2,080	10,643	8,563	411.7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조성	1,000	1,000	4,131	3,131	31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6,200	6,200	19,392	13,192	212.8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용자)	10,011	10,011	30,140	20,129	201.1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3,000	3,000	8,840	5,840	194.7
	스마트팜 실증단지	19,227	19,227	40,809	21,582	112.2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3,760	3,760	7,795	4,035	107.3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55,740	55,740	111,846	56,106	100.7
	농업관측	8,520	8,520	16,860	8,340	97.9
	푸드서비스 선진화	1,350	1,350	2,630	1,280	94.8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 소재기술개발(R&D)	5,631	5,631	10,509	4,878	86.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1,378	21,378	38,724	17,346	81.1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 모델구축(R&D)	3,159	3,159	5,713	2,554	80.8
	농촌공간계획수립	1,000	1,000	1,800	800	80.0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 지원	2,776	2,776	4,720	1,944	70.0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340	14,340	23,500	9,160	63.9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R&D)	2,843	2,843	4,658	1,815	63.8
	도시농업활성화	1,600	1,600	2,570	970	60.6
	임대형 스마트팜	16,400	16,400	26,104	9,704	59.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3,020	3,020	4,780	1,760	58.3
	농촌용수관리	51,092	51,092	79,557	28,465	55.7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 개발(R&D)	1,802	1,802	2,717	915	50.8
	농촌유희시설활용창업지원	3,000	3,000	4,500	1,500	50.0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재해보험	326,046	326,046	479,416	153,370	47.0
	배수개선	256,750	276,050	306,695	49,945	19.5
	농업인안전재해보험	71,202	71,202	83,415	12,213	17.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1,372	21,372	31,449	10,077	47.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500	1,500	2,289	789	52.6
양곡관리 특별회계 (1개)	수입양곡대	379,567	379,567	432,476	52,909	13.9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개)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 (용자)	8,360	8,360	12,540	4,180	50.0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562,760	562,760	629,740	66,980	11.9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30,000	130,000	157,000	27,000	20.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용자)	338,642	338,642	352,882	14,240	4.2
농지관리기금 (5개)	대단위농업개발(농지)	52,000	52,000	132,600	80,600	155.0
	조성토지관리 처분비	2,317	2,317	4,530	2,213	95.5
	맞춤형농지지원(용자)	464,928	464,928	646,027	181,099	39.0
	새만금지구(내부개발)	153,642	153,642	213,300	59,658	38.8
	농지연금(용자)	129,929	129,929	147,877	17,948	13.8
축산발전기금 (2개)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1,731	1,731	2,848	1,117	64.5
	가축분뇨처리지원	35,050	46,290	50,293	15,243	43.5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3개)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0,000	20,000	35,000	15,000	75.0
	폐업지원	102,000	102,000	132,000	30,000	29.4
	축사시설현대화	49,019	49,584	70,556	21,537	43.9
합계		3,346,120	3,377,225	4,386,940	1,040,820	23.7

주: 주요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대비 5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에 대한 검토

가. 현 황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¹⁾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농업직불 사업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이며, 예산안은 1조 60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0	0	0	1,060,500	1,060,5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농업직불제도를 살펴보면, 농업직불사업은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쌀소득보전 고정·변동직불, 경영이양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되어왔다. 이들 사업은 농지기능유지, 농가소득보전, 영농규모화, 친환경농업확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별로 지급 단가와 목적이 상이하다. 이 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시 쌀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목표가격³⁾을 토대로 한 직불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0-304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를 시행해왔다.

[기존 농업직불사업 현황]

사업명	도입연도	사업내용
쌀소득보전고정직불	2001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논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일정금액(2019년 기준 100만원/ha) 지급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005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보전
경영이양직불	1997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
밭농업직불제	2012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직불금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	2004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업직불	1999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경관보전직불	2005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한 농촌 지역의 경관 보전
피해보전직불	2004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 피해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폐업지원	2004	FTA로 인한 폐업에 대해 순수익을 보전

주: 기타 직불제 및 직불성 복지사업을 제외한 순직불제 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기존 농업직불사업은 전체 직접지불금의 80% 이상이 쌀에 편중(2017년 기준) 되어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대농 위주로 지급된다는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직불제도를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안에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익형직불제 개편방향]

현행			공익형직불제
품목	직불금의 80% 이상 쌀 농가에 지급	→	품목·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동일 금액 지원
지급방식	면적 비례 지급으로 대농 유리	→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 체계(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
지급조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	→	공익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률에 대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사업성격이 다른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직불 사업을 공익형직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의 예산안은 농업직불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 2.2조원 중 기존 7개 사업(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사업에 개별적으로 편성된 약 1.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조원 규모이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⁴⁾

4) 정부안을 기준으로, 2020년에 공익형직불 사업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직불 사업은 쌀(고정, 변동), 밭직불(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축산) 직불이며, 그 중 통폐합되어 기본형공익직불이 되는 것은 쌀고정, 쌀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이다. 기본형공익직불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사업은 선택형공익직불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들 직불 사업은 중장기적인 통폐합 방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농업직불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예산액(A)	2020 예산액(B)	증감	
							B-A	(B-A)/A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842,712	838,284	818,742	818,742	802,770	799,400	△3,370	△0.4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194,096	726,220	1,489,778	539,331	253,300	0	△253,300	△100
경영이양 직접지불	58,998	57,339	54,517	47,862	47,179	38,981	△8,198	△17.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42,918	41,896	43,086	44,458	54,647	53,872	△775	△1.4
발농업직접지불	140,934	172,631	184,770	192,793	207,790	213,995	6,205	3.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9,045	36,222	33,610	36,643	38,110	24,417	△13,693	△35.9
경관보전 직접지불	13,870	12,320	9,170	8,174	8,356	8,800	444	5.3
공익형직불 제도개편	-	-	-	-	-	1,060,500	1,060,500	순증
합 계	1,318,703	1,872,592	2,624,503	1,679,829	1,412,152	2,199,965	787,813	55.8

주: 1. 피해보전직불 사업과 폐업지원 사업은 재원 및 사업성격의 특성상 제외함

2. 예산액은 추경 및 수정계획액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직불제 개편방향]

개편 전		개편 후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 축산) 등	공익형 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 직불(농업, 축산) 등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기본형 공익직불
	발농업직불		면적직불금(역진적) 소농직불금(정액)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변경된 목표가격을 적용한 현행 직불제를 한시 적용(2018~2019년산)하여 쌀 변동직불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637호, 2018.11.15.) 및 같은 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 2019.9.9.)의 심사를 계기로 목표가격의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여 기존 농업직불 사업을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할 계획⁵⁾이다.

5)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예비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다. 이에 따라 농업직접지불제도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하는 내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발의되었다.⁷⁾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	진행사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37	2018-11-15	상임위 소위 계류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2404	2019-09-09	상임위 소위 계류 중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둘째,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이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면적을 토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이 농업인, 특히 중소농의 소득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건불리지역직불, 밭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사업 등 대부분의 기존 농업직불 사업은 면적을 비례해서 기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대농 위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즉,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업 구조적 특

6) 「2020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3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운영 소요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7) 이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29.에도 공익형직불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성으로 인해 토지를 많이 소유한 농민일수록 많은 양의 직불금이 지급되었고, 그로 인해 대농 위주로 지급된다는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업직불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그밖에 농업인에게는 기준 면적 구간별로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⁸⁾ 특히 동 법 개정안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경작하는 농가에게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⁹⁾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의 요건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기준 면적 구간, 지급단가 등에 대해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경우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큰 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일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중 하나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 있다.
 2.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 농촌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11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가 내 다른 지급대상자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농가 내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3. 농가 내에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 ③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

동 사업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농을 구분하는 기준, 소농직접지불금의 수준, 역진적 단가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¹⁰⁾

현행 방식의 쌀직불금(고정 및 변동직불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불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1ha당 연평균 약 177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농직불금 대상의 면적기준과 지급단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재정한계(2020년 예산안의 경우 2.2조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농가 소득의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농의 기준, 지급단과 및 구간별 면적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¹¹⁾

셋째,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이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이 실제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쌀에 집중되고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이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쌀의 공급과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시행되는 것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1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획은 소농 기준, 지급단과 및 구간별 면적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시행 시까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쌀 수급 추이]

(단위: 천톤, kg)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 급 량 (A)	5,361	5,786	6,216	6,131	5,645	5,294	5,311	5,553	5,968	6,326	6,258
소 비 량 (B)	4,675	4,793	4,707	5,164	4,883	4,493	4,436	4,199	4,220	4,439	4,816
재 고 량 (A-B)	686	993	1,509	967	762	801	874	1,354	1,747	1,888	1,442
1 인 당 연 간 소 비 량	75.8	74.0	72.8	71.2	69.8	67.2	65.1	62.9	61.9	61.8	61.0

주: 양곡연도(전년도 11월 1일 ~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이며, 정부양곡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재배면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¹²⁾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해 면적조절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¹³⁾ 그러나 대상 작목, 면적조절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이 쌀의 공급과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부문을 검토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농 기준, 지급단가 및 구간별 면적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시행 시까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쌀의 공급과잉과 관련한 공익형직불제 사업계획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⁴⁾

넷째, 공익형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성’의 구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임의조항으로 이행강제 관련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1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

14) 참고로, 2018년 농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추진결과, 당초 계획(50,000ha)의 61.9%(30,962ha)만이 신청하였고, 신청물량 중 26,447ha에 타작물이 재배되었는데, 동 사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벼를 재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논에서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재배기술 및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쌀 변동직불제의 개편에 있어 기본 방향 중 하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강화이며,¹⁵⁾ 공익형직불제에 있어 ‘공익’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9호¹⁶⁾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¹⁷⁾ 따라서 공익이란,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의미한다. 즉, 농업 직불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직불제가 피해보전의 논리를 넘어 환경·생태 관련 다양한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¹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에서의 공익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콩, 옥수수,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고 수급이 문제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환 유도할 계획이며,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⁹⁾

15)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2019

1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

18)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세부추진방안」, 2018.8

19)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농 기준, 지급단가 및 구간별 면적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은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과 시행 시까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팜이란 온실·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¹⁾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11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26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스마트팜 관련 예산안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 예산은 전체의 41%로, 스마트팜혁신밸리란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청년창업, 기술혁신(R&D), 판로개척 등의 기능을 집약시킨 일종의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사업에 932억원을 편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관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예산액(A)	2020 예산안(B)	증감 (B-A)
스마트팜 혁신밸리	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0	0	12,190	17,388	5,198
	② 임대형 스마트팜	0	0	16,400	26,104	9,704
	③ 스마트팜 실증단지	0	0	19,227	40,809	21,582
	④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3,500	10,500	28,000	8,925	△19,075
	소계(a)	3,500	10,500	75,817	93,226	17,409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관련 예산안(b)		50,186	65,658	175,800	226,450	50,650
a/b		7.0%	16.0%	43.1%	41.2%	-

주: 2019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혁신밸리는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20ha 이상의 부지에 용수, 전기, 도로 등을 정비하고, 임대형스마트팜(6ha)과 청년교육과 취·창업 지원기능을 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4.5ha),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실증단지(3ha), 지원센터(4,350㎡)를 구축할 계획이다.²⁾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스마트팜 기자재 KS 국가표준 제정”, 2018.12.26

[스마트팜혁신밸리 조감도(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예산안	사업내용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8,925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정지, 도로, 용수, 전기, 오폐수처리 등 기반조성 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	17,388	스마트팜 관련 장기실습 및 교육을 위한 온실 설치
임대형스마트팜	26,104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설치
스마트팜실증단지	40,809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온실 건설 및 센터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스마트팜 혁신밸리공모결과 전남(고흥)·경남(밀양) 선정”, 2019.09.29

2-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³⁾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0억 7,500만원이 감액된 8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10,500	28,000	28,000	8,925	△19,075	△68.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10,500	28,000	28,000	2,800	△25,200	△90.0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 참여단지 조성	0	0	0	6,125	6,125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은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비가 편성되었으나, 2020년에는 신규내역사업이 1개 추가되어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시설원에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비용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단지 1개소를 선발하여 개소당 100억원 기반조성비용 중 국비(70%)와 1년차 비용(40%)을 감안하여 2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내역사업은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 참여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존농업인이 참여하여 혁신밸리를 조성할 경우 이에 대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내역사업은 17.5ha를 목표로 추진되며, ha당 총 사업비 5억원을 한도로 이 중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70

[2020년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 분	2020안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단지조성 1개소 - 2,800백만원=1개(신규)×10,000백만×70%×40%(1년차)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 참여단지 조성	- 17.5ha×500백만원×70%(국비) * 혁신밸리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 기존농업인 참여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기 선정된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ha 규모의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100억원 중 70%를 국고로 보조하는데, 기반시설이란 용수·전기수전·부지정지⁴⁾·도로·폐수처리 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에 걸쳐 1개소(충남 부여)를 선정하여 조성중이고⁵⁾, 2018년에는 2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에도 2개소(전남 고흥, 경남 밀양)를 추가 선정하였다.

4) 부지정지란 토지를 평탄하게 고르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5) 2019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혁신밸리기반조성 관련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예산액	2018 예산액	2019 예산액	합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부여)	3,500	3,500	0	7,000
혁신밸리 1차지역(경북, 전북)	0	7,000	7,000	14,000
혁신밸리 2차지역(전남, 경남)	0	0	14,000	14,000

주: 2018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의 경우 1년차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2017~2018년 사업의 경우 2017년 4~5월 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사업성·대상지 적정성·수출계획 등을 고려하여 6월 충청남도 부여군을 선정하였다. 이후 세부추진계획 확정 및 설계 단계를 거쳐 2018년 착공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지(13.5ha)는 2019년 6월에 성토 완료하였으며, 잔여부지의 경우 2019년 하반기에 성토 완료할 예정이다.

2018~2019년 사업의 경우 2018년 4~7월 공모를 통해 8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하였으나, 2018년 10~11월에 이르러서야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8년 11월부터 미확보부지 매수, 2019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0월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19~2020년 사업의 경우 2019년 1월 공모를 통해 3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전남은 2019년 9월 기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 이후 인허가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야하며, 경남의 경우 2019년 7월 미확보부지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0월 현재 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통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구분	2018-2019 사업 (상주)	2018-2019 사업 (김제)	2019-2020 사업 (고흥)	2019-2020 사업 (밀양)
사업자 공모	2018.4월~7월	2018.4월~7월	2019.1월~3월	2019.1월~3월
선발	2018.8월	2018.8월	2019.3월	2019.3월
세부추진 계획 확정	총 1회 (2018년 12월)	총 3회 (2018년 12월, 2019년 2월, 9월)	총1회 (2019년 9월)	총1회 (2019년 9월)
토지매입 시작	2018. 11월	2018. 12월	2019. 6월	2019. 7월
토지매입 종료	2020. 3월 예정	2020. 1월 예정	2019. 9월	2019. 12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19. 4월	2019. 3월	2019. 10월 예정	2019. 10월 예정
설계업체 공모	2018. 11월	2019. 1월	2019. 10월 예정	2019. 10월 초
설계업체 선정	2019. 2월	2019. 2월	2019. 11월 예정	2019. 10월 말
문화재 지표조사 시작	2019. 4월	2019. 2월	해당없음	2019. 11월 예정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2019. 6월	2019. 4월	해당없음	2019. 12월 예정
기본·실시설계 완료	2019. 10월 예정	2019. 10월 예정	2020. 2월 예정	2020. 2월 예정
공사업체 공모	2019. 10월 예정	2019. 10월 예정	2020. 2월 예정	2020. 2월 예정
공사업체 선정	2019. 11월 예정	2019. 11월 예정	2020. 4월 예정	2020. 3월 예정
기반조성 착공	2019. 11월 예정	2019. 12월 예정	2020. 5월 예정	2020. 3월 예정
기반조성 종료	2020년 예정	2020년 예정	2021년 예정	2021년 예정

주: 1. 전남 고흥의 사업예정지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간척지로(2008년 12월 준공) 「매장문화보호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음영은 사업추진 예정인 단계를 의미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 결과 2019년 편성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예산 중 혁신밸리기반 조성 관련 사업비 210억원의 대부분은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차원에서 실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9년 혁신밸리 관련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혁신밸리 1차지역 (경북, 전북)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4,000	0
혁신밸리 2차지역 (경남, 전남)	14,000	14,000	14,000	7,000	7,000	0	7,000	0

주: 2019년 10월 기준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2018~2019년 신규선정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전북·경북)의 경우 해당 부지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⁶⁾, 임대형스마트팜⁷⁾, 스마트팜실증단지⁸⁾를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⁹⁾은 청년(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들이 스마트팜 분야에 창농할 수 있도록 실습용 온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

6)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80

7)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83

8)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86

9)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00-380

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0	12,190	12,190	17,388	5,198	42.6
실습농장 조성	0	12,190	12,190	13,388	1,198	9.8
보육운영비	0	0	0	4,000	4,0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임대형스마트팜 사업¹⁰⁾은 전문교육 및 실습 등을 마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을 임대·운영하며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임대를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7억 400만원이 증액된 26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임대형스마트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대형스마트팜	0	16,400	16,400	26,104	9,704	59.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 및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2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의 2020년 예산안은 173억 8,800만원으로, 실습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습농장 조성비 133억 8,800만원과 보육운영비 40억원으로 구성된다. 1개의 온실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1억원¹¹⁾으로 국비(70%)와 지방

10)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00-383

비(30%)로 지원되며, 2020년 예산안에는 2018년 선정된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한 2년차 사업비와 2019년 선정된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한 1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내역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역]

내역사업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실습농장 조성	12,190백만 = 4.5ha×2,900백만원 ×70%(국비)×2개소(전북·경북) ×66.7%(1년차)	13,388백만원 = <u>13,050백만원×70%×2개소(전북·경북) ×33.3%(2년차)</u> + 13,050백만원×70%×2개소(전남·경남) ×40.0%(1년차)
보육 운영비	-	4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이란 스마트팜 전문교육·실습을 마친 청년농이 적정 임대료만으로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운영할 수 있는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¹²⁾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에 대한 2년차 사업비와 신규 4개의 임대용 온실을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임대형스마트팜 예산안 편성내역]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16,400백만원 = 2개소(전북·경북)×29억× 6ha×70%(국비)×66.7%(1년차)	26,104백만원 = <u>2개소(전북·경북)×29억×6ha×70%(국비)×33.3%(2년차)</u> + 2개소(경남·전남)×29억×6ha×70%(국비)×40%(1년차) + 2개소(혁신밸리 외 지역)×30억원×5ha×70%(국비)×40%(1년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1) 실습용 온실은 교육형 실습온실(1.3ha)과 경영형 실습온실(3.2ha)로 구성되며, 다양한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범용온실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다. 실습용 온실의 ha당 사업비는 29억원으로 4.5ha의 면적에 조성할 계획인 바, 총사업비는 130억 5,000만원이다.
- 12) 임대형스마트팜은 6ha 규모이며 스마트팜청년보육사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본 3년간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형스마트팜의 ha당 지원단가는 29억원인데, 이는 비닐온실의 건설비용과 지열에너지 시설의 건설비용으로 구성(비닐온실 15억원/ha + 지열 14억원/ha)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및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2020년 예산안에 2018~2019년 스마트혁신밸리 1차지역에 대한 2년차 사업비 및 2차지역에 대한 1년차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혁신밸리 관련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연차	예산액	연차	예산안
혁신밸리 1차지역(경북, 전북)	1년차(66.7%)	12,190	2년차(33.3%)	6,090
혁신밸리 2차지역(경남, 전남)	-	-	1년차(40.0%)	7,29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혁신밸리 관련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연차	예산액	연차	예산안
혁신밸리 1차지역(경북, 전북)	1년차(66.7%)	16,400	2년차(33.3%)	8,200
혁신밸리 2차지역(경남, 전남)	-	-	1년차(40.0%)	9,5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이들 지역의 사업의 시행경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하였고, 2019년에는 해당 지역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및 임대형스마트팜을 건립하기 위한 1년차 사업비를 편성하였지만, 2019년 10월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토지매입, 공사업체 공모, 선정, 공사발주 및 부지정지 등 공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육센터와 임대형스마트팜을 건설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 김제는 혁신밸리 예정부지의 보존가치, 지방비 재정부담 우려,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대책위원회가 조성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이 지역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2019년 9월 현재 기반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

에는 실습용 온실 및 임대형 온실의 조성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가 전액 편성되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 및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운영비 사업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완공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선발 및 교육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의 내역사업비로 편성된 보육운영비는 청년농업인을 교육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300명의 교육비 4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선발된 청년들에 대한 12개월분의 교육비(20억원, 100명)와 2020년 신규 선발할 교육생(200명)에 대한 6개월분의 교육비로 구성된다.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보육운영비 예산안 편성내역]

400백만원 = 2019년 선발(전북·경북) 교육생 100명(12개월)
+ 2020년 선발(전북·경북·전남·경남) 교육생 200명(6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혁신밸리 내에 실습이 가능한 교육용 온실을 설치하고,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혁신밸리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모집공고(5월)를 통해 청년농업인 104명을 선발하였고, 9월부터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과 경북 도농업기술원(상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은 총 1년 8개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입문(2개월), 교육형실습(6개월), 경영형실습(12개월)로 이루어진다. 입문과정은 투자유치 컨설팅, 경영·마케팅, 정착 지원, 온실 설계·관리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론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교육형실습과정(6개월)과 경영형실습(12개월)은 실습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

구분	과정별 주요 내용
입문과정 (2개월)	- 창농 지식, 투자유치 컨설팅, 경영·마케팅, 정착 지원, 온실 설계·관리, 양수분 급배액, 양액재배, 스마트 팜 운영관리, 해외전문가 특강
교육형실습 (6개월)	- 보육센터 실습장 등을 활용하여 6개월간 현장실습하며 경험축적, 컨설팅·현장지도, 우수 스마트팜 사례 벤치마킹 등
경영형실습 (12개월)	-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온실을 제공, 전문가 컨설팅·현장지도 교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스마트팜으로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루세요”, 2019.05

따라서 교육형실습과정(6개월)과 경영형실습(12개월)은 스마트팜혁신밸리에 구축할 교육용온실 및 임대형온실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이 순연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육받을 온실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19년 5월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경영실습과정을 교육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에 경영실습농장이 개소되어야 경영형실습(12개월) 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데 현재 추진경과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일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의 교육이수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용자를 시행할 계획이고, 해당 자금이 재무평가는 배제하고 기본 자격 심사 및 비재무평가만 실시하는 등 용자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¹³⁾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의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일정과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일정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선정된 지역에는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절차 및 건설공정의 경우 2019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0월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이 다소 순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습농장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유망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종합자금(年1%) 4월부터 지원(청년농 1인당 최대 30억 한도까지 지원)”, 2018.04.13

[스마트혁신밸리 토지 구성현황]

(단위: ha)

구분		충남 부여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전체면적		24.6	42.74	21.32	33.35	22.10
온실면적		18.2	11.5	9.3	11.3	12.6
토지 이용 현황	사유지	22.1	12.28	10.42	-	6.46
	국유지	1.9	1.88	-	33.35	1.42
	공유지	-	27.17	10.9	-	14.14
	기타	0.6	1.41	-	-	0.08
토지 매수 현황	사유지 중 매입 완료	18.9	9.14	6.24	-	-
	사유지 중 매입 예정	3.2	3.14	4.18	-	6.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후 임대형스마트팜을 통해 영농으로 이어질 때 사업성고가 제대로 구현될 것인 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교육일정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가. 현 황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ICT 기자재,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¹⁴⁾인 실증장비 구축 사업은 스마트팜실증단지에 구축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126억원을 편성하였다.

1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00-386의 내역사업

[2020년도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팜실증단지	0	19,227	19,227	40,809	21,582	112.2
실증온실 및 지원센터 구축	0	18,987	18,987	20,885	1,898	10.0
실증장비 구축	0	0	0	12,600	12,6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 실증온실 및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조성할 예정인 실증단지(3ha)는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의 성능과 재배한 작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온실로,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원센터의 경우 실증단지에서 근로하는 인력과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실증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2018~2019년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에 대한 2년차 사업비와 2019~2020년 조성지역(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대한 1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실증장비 구축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동 내역사업은 스마트팜실증단지에 구축할 장비구입비로 개소당 90억원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실증장비 구축 : 9,000백만원 × 70% × 2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예산안에 스마트팜실증단지에 비치할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스마트팜실증단지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예산안에 스마트팜혁신밸리 2개소에 실증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개소당 63억원씩 126억원의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구축 예정인 장비는 온습도챔버, 강우챔버 등 생육장비와 농산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잔류농약 분석기와 같은 연구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2020년에 관련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실증단지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실증장비에 대한 구입예산이 편성된 지역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11월에 이르러서야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8년 11월부터 미확보부지에 대한 매수가 시작되어 2020년 3월에 토지 확보가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업추진 지역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공사 일정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대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일정과 장비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2020년 예산을 통해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혁신밸리(경북 상주) 추진일정]

■ 2019년 1월기준
■ 2019년 9월기준

추진내용 \ 기간	2019	2020
○ 토지매입		
○ 인허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설계발주		
- 실시설계		
○ 기반조성 토목공사		
- 공사발주		
- 부지정지(절·성토, 옹벽설치 등)		
- 도로, 우수, 오수, 용수, 대체시설 등		
- 전기인입, 저류지, 광장, 주차장, 조경 등		
- 공사완료		
○ 핵심시설 건축공사		
- 공사발주		
- 가설·토기초·지열시스템공사		
- 골조·창호·내외부마감공사		
- 온실공사 완료		
- 지원센터 건축공사		
- 조경공사		
- 공사완료		
○ 장비구축		
- 설계발주		
- 실시설계		
- 공사발주		
- 공사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혁신밸리(전북 김제) 추진일정]

■ 2019년 1월기준
■ 2019년 9월기준

추진내용 \ 기간	2019	2020
○ 토지매입		
○ 인허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설계발주		
- 실시설계		
○ 기반조성 토목공사		
- 공사발주		
- 부지정지(절·성토, 옹벽설치 등)		
- 도로, 우수, 오수, 용수, 대체시설 등		
- 전기인입, 저류지, 광장, 주차장, 조경 등		
- 공사완료		
○ 핵심시설 건축공사		
- 공사발주		
- 가설·토·기초·지열 시스템공사		
- 골조·창호·내외부마감공사		
- 온실공사 완료		
- 지원센터 건축공사		
- 조경공사		
- 공사완료		
○ 장비구축		
- 설계발주		
- 실시설계		
- 공사발주		
- 공사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1개의 실증단지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산출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개의 실증단지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90억원 중 70%를 국고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이 국고 보조를 통해 실증온실을 구축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의 성능과 재배작

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단지에 구축할 장비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고자 하는 분야, 품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구축할 장비의 기종에 대해 논의를 선행한 후 실제 실증단지에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실증하려는 기업, 연구기관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의 기본 취지와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안 산출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¹⁵⁾

[실증장비 구축 사업 총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종류	금액	산출근거
생육환경구현 챔버	990	온습도, 풍향/풍속, 강우, Co2, pH, 토양함수 등
물리적 측정 장비	1,690	환풍시설, 관수시설, 양액공급시설, 구동모터, 항온/항습 시설 등
품질검정장비	2,421	고온가압시설, 열충격/온도급변 시설, 조명시설, 가속시설, 검·인증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시설
성분분석 장비	1,100	기능성 성분분석 장비, 잔류농약분석 장비
실증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석 HW	541	스토리지, 서버랙 등
실증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석 SW	1,240	실증서비스 통합플랫폼 패키지 개발, DATA 분석 모델 개발 시설, 서버보안시설 등
로봇	1,000	농업용 로봇 환경 챔버, 고성능 3D 스캐닝 장비
스마트팜 전시장비	440	스마트팜(복합제어기, 구동기, 센서), 양액공급기, 스마트 농기계, 피복비, 온실골조비
체험형 유리온실	90	체험형 유리온실 구축비
AR·VR 개발비	70	체험·시연 프로그램 개발비
AR장비·VR 장비	30	AR시연장비, VR시연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	181	3D프린터 3대, 3D스캐너 2대, 보링장비, 레이저 조각기, 설계 S/W, 설계용PC 3대, 프로젝터 등
스마트팜 유지보수	15	현장 점검용 노트북 3대, 휴대용 점검기(전압, 센서) 3대, 주요 부품(센서 및 보드류)
합계	9,8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5)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진흥센터, ICT기자재검정팀, 스마트팜사업팀 등), 기업 등 실증장비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구입예정 장비와 산출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으나, 실증장비 구입에 있어 특정 기업의 제품을 특정할 수 없고 낙찰과정 등에서 제품별 구입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 관련 예산은 762억 2,500만원으로, 이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이나, 내역사업인 축산직불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36억 9,300만원 감소한 244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사업에 2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90억 6,000만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¹⁾

[연도별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예산액	2018 예산액	2019 예산액(A)	2020 예산안(B)	B-A
친환경농업직불	41,096	43,545	38,110	24,417	△13,693
- 친환경농업직불	23,943	26,392	22,445	22,832	387
- 친환경축산직불	17,153	17,153	15,665	1,585	△14,080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0	0	0	9,060	9,060

주: 2019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²⁾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국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9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은 총 14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에는 전년 대비 9억 3,100만원이 감액된 76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34-337

[2020년도 임신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0	0	0	9,060	9,06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임신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 추진 중인 지역 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임신부(임신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공급(1인당 연간 48만원 수준)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45,000명의 임신부에게 매월 4만원씩 12개월 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원재료 구입비 86억 4,000만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3억원, 교육·홍보비 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임신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8,640 = 45,000\text{명} \times 4\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times 40\%(\text{국비})$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0
* 교육·홍보: 1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5년 이후 「국민영양관리법」³⁾을 토대로 지역사회통합건

3)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신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강증진 사업⁴⁾의 내역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지자체경상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영양 분야 사업은 생애주기에 따라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 사업,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⁶⁾을 하고 있다. 이 중 영양플러스 사업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과 월 평균 70,837원 상당의 보충식품(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김장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굴 등)을 공급⁷⁾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업대상, 지원내용, 배송주기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구분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임산부 - 임신기간 10개월 - 출산 후 12개월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거주	사업운영 지자체 : 광역단위 1~2개소, 시·군단위 20여개소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지원품목	친환경농산물	농수축산물 및 유제품 등
소득기준	무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4) 코드: 건강증진기금 3333-300

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675억 2,400만원이다.

6) 2017년 기준 254개 보건소당 평균 지원 국비는 1.5억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50%이다.

7)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분야 안내서」

구분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 판정방법	무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사업량	2020년 45,000명	전국 82,045명
지원비율	중앙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중위 기준 소득 65% 이하: 국비 100% - 중위 기준 소득 65% 초과 80% 이하: 국비 90%, 자부담 10% ※ 4인 기준 중위소득: 65% 2,999천원 / 80% 3,691천원
지원단가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영양교육, 보충식품패키지, 식품패키지(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굴/오렌지주스 등) ex) 산모 패키지(1인 1일 기준): 감자 50g, 달걀 60g, 당근 35g, 쌀 90g, 우유 200ml, 검정콩 15g, 김 3g, 미역 2.5g
배송주기	연간 최대 24회 (월 2회)	- 감자, 달걀, 당근, 굴 등 : 유통기한 및 보충식품의 <u>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배송함</u> - 우유 : 냉장우유의 경우 약 2·3일에 1회, 혹은 매일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멸균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이 길더라도 1달에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공급함 - <u>기타 식품(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 월 1회</u>

자료: 1.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분야 안내서」
2.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86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의 예산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재원구성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86억 4,000만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먼저 선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2019년 9월 개최하였고, 2019년 10월까지 시범지역 대상지역을 공모·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방법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임산부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⁸⁾

8)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12개월 간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예산안은 전체 임산부의 15%인 4.5만명에게 월 4만원씩 12개월간⁹⁾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8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합계	사업비			산 출 근 거
	국비	지방비	자부담	
22,020	9,060	8,640	4,320	- 친환경농산물 공급: 8,640 = 4.5만명×4만원×12개월 ×40%(국고) - 사업운영비: 420(시스템 구축 300, 홍보 1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받아 친환경농산물을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업구조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의 특성상 지체없는 배송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통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인 반면, 12개월 간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시범지역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완료해야하는 것이다.¹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앞당겨 수립(2019년 10월 10일)하였으며,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 및 선정, 공급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2020년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9)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총 22개월)의 기간 중 12개월 동안 지원(임산부 6개월 + 산모 6개월)할 계획이다.

10)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달(2019년 10월 10일)하고, 10월말까지 시범지역 및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도입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공모 및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지역 내 유통업체 중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공모 및 선정 등의 과정도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일정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지역 선정(10월) 후 공급업체 지정,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사업을 시작(2020.1월~)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절차]



지역 내 유통업체 중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넷째,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에만 시행되는 사업인 반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도에만 시행되는 사업인 반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있다.

해당 시스템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한 통합시스템으로, 2020년 3월 이후 구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공급업체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4월 이후에는 새로 구축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3억원의 예산을 재원으로 구축하는 통합시스템은 4월~12월 9

개월간 사용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 사업¹¹⁾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0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친환경농업직불	34,906	38,110	38,110	24,417	△13,693	△56.1
친환경축산직불	13,426	15,165	15,165	1,110	△14,055	△1,266.2

주: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면, 친환경축산직불 사업도 선택형직불제로서 공익형직불제에 포함될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대상 농가가 108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 축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농업직불 사업과 축산직불 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축산직불 사업은 인증단계·품목별 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9년까지 친환경 축산직불 사업은 무항생제축산물¹²⁾과 유기축산물¹³⁾¹⁴⁾로 구분하여 운영해왔지

1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0-383

12) 무항생제축산물이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

만, 친환경축산물이 국제인증체계에 따라 유기축산물로 단일화¹⁵⁾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지급하던 직불금이 종료¹⁶⁾되었다. 그 결과 친환경축산직불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0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0년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지정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유기축산 농가이다.

[친환경축산직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 친환경축산직불금 15,165	*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 1,110
* 친환경축산 교육·홍보 500	* 친환경축산 교육·홍보 4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축산농가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내용]

구분	내용
대상농가	유기축산농가
대상축종	한우(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토종닭),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유)
지원단가	한우 : 170천원/마리 젓소(우유) : 50원/L 돼지 : 1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 10원/개 육계 : 200원/마리 오리 : 400원/마리 오리알 : 20원/개 등
지원한도	3천만원, 5회
지급기간	1년 1회(12월에 보조금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 13) 유기축산물이란,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 14) "유기사료"란 유기농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자료: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1]
- 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개선 추진”, 2019.07.31
- 16) 무항생제 축산 농가에 대한 직불금은 3년 간 지급되었으며, 이미 2018년 이후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는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유기축산에 대한 축산직불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축산직불금이 대부분 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되었기 때문에, 2019년 기준 유기 축산 농가는 108개 농가에 불과하고, 이 중 41개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축산직불 사업 인증 및 직불금 지급현황]

(단위: 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증 농가수	유기	108	103	106	110	111	105	101	108
	무항생제	9,593	11,124	8,386	8,048	8,668	7,570	6,014	6,322
	소계	9,701	11,227	8,492	8,158	8,779	7,675	6,115	6,430
직불금 지급농가	유기	23	25	24	33	34	33	34	41
	무항생제	737	1,289	2,008	1,870	1,707	1,452	1,210	1,283
	소계	760	1,314	2,032	1,903	1,741	1,485	1,244	1,324

주: 1. 2019년 직불금 지급농가는 신청농가(실제 수령농가는 12월에 파악될 예정)이다.

2. 2019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8월 1일 기준이다.

3. 직불금지급농가는 실제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축종별 인증현황을 보면, 오리고기나 오리알의 경우에는 유기축산물로 인증 받은 사례가 전무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3건에 불과한 바, 친환경 축산의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환경보호, 먹거리 안전강화, 축산물의 신뢰제고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축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축종별 유기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황]

(단위: 호)

구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계	구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계
쇠고기	27	3,528	3,555	우유	56	188	244
돼지고기	3	795	798	계란	13	469	482
닭고기	3	667	670	오리알	-	10	10
오리고기	-	429	429	기타	5	215	220
합계	107	6,301	6,408				

주: 1. 2018년도 전체 인증농가수(6,115호)와 축종별 인증농가수(6,408호)의 차이는 한 농가가 두 개 이상의 축종을 인증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기타란, 산양, 사슴(녹용), 메추리알, 산란육성계 등을 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가. 현 황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고령·은퇴·전업·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임차하여 농지를 매도·임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¹⁾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 내역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120억원 증액된 5,6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맞춤형농지지원	346,661	464,928	464,928	646,027	181,099	38.9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60,634	361,200	361,200	560,000	112,000	3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청년창업농 등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 농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2020년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계획안 편성내역]

$$2,500\text{ha} \times 224\text{백만원/ha} = 5,600\text{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지관리기금 1160-350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1,159ha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917ha를 매입하는데 불과하였고, 전체 매입 면적의 96.3%가 논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270ha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7월 기준 655ha를 매입하여 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연도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현황]

(단위 : ha)

구분	2013		2014		2015		201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논	1,000	714	530	530	630	609	544	558
밭		16		11		15		22
합계		730		541		624		580
구분	2017		2018		2019.7		202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논	703	684	1,159	883	1,270	622	2,500	-
밭		19		34		33		-
합계		703		917		65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 결과 2018년 3,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606억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도 3,6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7월까지 1,99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2,500ha를 매입할 계획으로 5,600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매입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66,500	166,498	127,754	127,726	152,550	152,534	148,600	148,597
2017		2018		2019.7		202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80,000	179,949	314,000	260,634	361,200	199,775	56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려고 하는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현행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농하거나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셋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매입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9년까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만을 매입하였지만, 향후 ①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함으로써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② 매입 하한 면적기준도 완화(1,983㎡ 이상 → 1,000㎡ 이상)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③ 논과 밭 구분 없이 매입단가가 책정되었던 것과 달리, 밭의 높은 매입단가를 고려하여 가격을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증가한 사업물량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개선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매입대상	농업인	비농업인 추가
매입면적	1,983㎡ 이상	1,000㎡ 이상
매입단가	논·밭 구분 없이 지역별 2.8만원~5만원	밭 단가 상향조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은행 개선으로 농촌정착 견인”, 2019년 8월 16일

그러나 비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매수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³⁾을 통해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지법」 제8조제2항⁴⁾은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⁵⁾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비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3)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4)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5)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을 통해 매수할 예정인 ‘비농업인 보유 농지’의 정의와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비농업인이라 할지라도 상속에 따라 농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 동 사업을 통해 해당 농지를 매수하는 등 매입대상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까지 1,983㎡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2020년부터 1,000㎡ 이상인 농지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0년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입 하한 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은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영농희망 유형, 시설물 설치 수요 증가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소규모 논과 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경지정리 계획」에 따르면, 경작상 최소단위의 형상과 크기는 고성능농업기계에 의한 효율적인 작업관리와 용·배수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⁶⁾ 최소 2,000㎡⁷⁾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 농지는 작업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단위 면적당 생산비가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의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매수 예정인 농지면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구의 표준적인 형상 및 크기]

(단위 : ㎡)

지형별		지대	면적
평탄지 1/200 이하		건답지대	3,000~9,000
		습답지대	3,000~6,000
경사지	완경사지 1/200~1/50	건답지대	3,000~4,500
		습답지대	3,000
	급경사지 1/50~1/20		2,000~3,000

주: 1.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위를 ㎡로 변경하였다.

2. 경구란, 주변이 논두렁, 용수지거, 배수지거, 농도로 둘러싸여 경계가 분명한 경작상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 계획」, 2018.4, p.7.

6)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 계획」, 2018.4

7) 급경사지 1/50~1/20 기준이다.

가. 현 황

대한민국농업박람회¹⁾ 사업은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박람회·행사를 통합·연계하여 국가적 규모의 농업 종합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한민국농업박람회	0	0	0	3,250	3,25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의 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할 적절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 가공·유통·수출, 농촌체험 등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체험이 가능한 실내·외 전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1²⁾에 따른 농업인의 날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농림축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35-343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11

농업인의 날: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산식품부는 2020년 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320-01)³⁾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⁴⁾는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 공모(公募)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동 법은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은 농업인의 날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수행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사업개요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자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전시를 대행할 기관을 공모 및 선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320-01)의 경우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이 공모 절차 없이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시행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320-01)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0년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개요]

구분		내용
예산안	전시장 임차료	700백만원 = 킨텍스(54,000m2) × 7일 × 100백만원
	전시·체험 부스 조성	900백만원 = 300개 부스 × 3백만원(목공부스 기준)
	가축·동물체험·계류 시설	640백만원(대동물 350두/중동물 250/소동물 200)
	전시대행·관리	800백만원 ※ 행사대행 = 450백만원 (행사기획 150 + 기념품/전기·음향 부대시설 등 300) ※ 행사관리 = 250백만원 (사회자/개막식 공연 100 + 보안/안내/도우미 등 150) ※ 행사지원 = 100백만원 (행사체험비 50, 동물관리/폐기물 처리 등 50)
	박람회 운영·관리	210백만원(행사 모니터링(90), 홈페이지 운영(30), 협의회(55), 출장 등 직접경비(35))
지원방법		민간경상보조(320-01)
지원조건		국비 100%
지원대상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동 사업의 시행 근거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⁵⁾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홍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⁶⁾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의 위탁 규정으로 미루어보아 동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행사비는 민간경상보조(320-01)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단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할 경우 박람회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다양한 기관을 경쟁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박람회의 질적 제고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 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다. 생산자단체
 - 7)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탁사업비(320-02)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말한다.
 - 8)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9, p.38.

[지원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 효율화 추진]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 위탁사업비로 변경**

둘째,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전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의 예산안은 전시장 임차료(킨텍스, 7일×1억원)와 부스조성비(300개 부스×300만원) 이외에 가축·동물·체험·계류 시설 관련 예산 6억 4,000만원과 동물관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가축·동물·체험·계류 시설은 대동물 350두, 중동물 250두, 소동물 200두에 관한 전시시설 및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살아있는 가축을 전시⁹⁾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전시방법, 비용 등에 대한 분노 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¹⁰⁾가 있다.

[가축·동물체험·계류 시설 구성 내용]

- ① (스마트 축사) 축사에 ICT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축산과 가축을 원격, 자동으로 관리하는 농장을 구현
- ② (친환경 축사) 무악취, 무방류, 무오염 등 깨끗한 축사 및 생산성 향상 실현사례 구현
- ③ (동물복지농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사육하는 소·돼지 농장 구현
 - *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소, 돼지 등 생축 전시 및 체험(소젖짜기, 먹이주기 등), 경축 순환 농장 등
- ④ (생축 전시·체험) 전통한우 및 홀스타인 품평회, 말·애완 돼지 등 생축 전시
- ⑤ (교육·체험) 게임, VR(가상현실) 등 활용, 농축산체험 및 교육 콘텐츠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한육우·젖소·말·돼지 등 대가축 350두, 양·염소·개·고양이 등 중가축 250두, 토종닭·토끼·병아리·칠면조 등 소가축 200두 등 토종 위주로 다양한 품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10)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시 내용과 관련하여 전시장 내·외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시장 측과 사전 협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¹⁾은 국가 스마트팜 표준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4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		B-A	(B-A)/A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0	0	0	4,500	4,5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 계획은 보조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²⁾에 따르면,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①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 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와 ② 고유 업무는 아니나,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 사업관리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77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경우³⁾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 제33조⁴⁾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인 반면,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사업은 공모절차 없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국고 100%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공모에 대한 예외조항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인 반면 공모 절차없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지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촌진흥법」 제33조3항으로 미루어볼 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표준화 사업과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 계획은 보조금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둘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 관련 법률인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표준화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별도의 법률⁵⁾을 제정⁶⁾하여 표준화⁷⁾ 사업을 진행할 근

3)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9, p.38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

4)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2020년 예산안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예산안	산출내역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4,500	
- 국가표준 적용 설계 및 컨설팅 지원	500	50개 업체 × 10백만원
- 시제품 및 제품 개선	3,000	100개 업체 × 30백만원
- 검인증 비용지원	450	3백만원 × 1.5회 × 100개 업체
- 스마트팜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	300	-
- 홍보 및 성과관리	2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45억원을 보조하여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관련 법률에 표준화 관련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⁹⁾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6) 2019. 1. 15. 신설

7)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제품 및 부품의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을 통일화 및 단순화 시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표준화 작업의 단순화, 일원화, 통일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표준·제품안전·인증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설립 하고 있다.

8)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표준화 지원사업 추진은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3항 3호, 4호, 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유업무라는 입장이다.

가. 현 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R&D 예산안은 27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1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350억 2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이 중 23개 사업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소관하며, 동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은 국가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담당한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유형	사업기간	예산액	
			2019	2020(안)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출연	'14~'20(20일몰)	23,903	15,249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출연	'18~'20	5,558	6,538
첨단생산기술개발	출연	'11~'21(21일몰)	28,505	23,547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출연	'18~'20	2,843	4,658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	출연	'19~'20	5,750	8,000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출연	'19~'20	4,250	4,000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출연	'11~'18(18일몰)	7,181	205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출연	'11~'18	4,321	3,498
수출전략기술개발	출연	'18~'20(19일몰)	13,010	8,518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출연	'19~'23	3,159	5,71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출연	'10~'19(19일몰)	20,981	6,708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출연	'19~'21	5,631	10,509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출연	'12~계속	13,581	14,919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출연	'18~'24	1,802	2,717
GoldenSeed프로젝트(농식품부)	출연	'12~'21	26,199	25,280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출연	'14~'21	6,355	6,446
(신규)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출연	'20~'22	0	3,500
(신규)작물바이오스마트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	출연	'20~'24	0	4,500
(신규)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출연	'20~'22	0	6,000
(신규)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출연	'20~'24	0	13,148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사업명	유형	사업기간	예산액	
			2019	2020(안)
(신규)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출연	'20~'22	0	2,000
(신규)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출연	'20~'22	0	6,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출연	'09~계속	9,354	10,326
합계			223,921	235,002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R&D 사업 중 3개 사업(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 검역본부 기본경비 등 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고, 정책연구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시행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912	9,354	9,354	10,326	972	1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0-410

나. 분석의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R&D사업 사업비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R&D사업은 R&D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또는 실패한 R&D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R&D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처분할 수 있다.²⁾

그러나 2018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R&D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조치 결과, 환수처분액 12억 2,320만원 중 미환수액은 8억 70만원에 이르러 환수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환수처분액(A)	338.3	37.3	211.5	1,223.2
환수액	226.7	37.3	163.5	422.5
미환수(B)	111.6	0.0	48.0	800.7
비율(B/A)	33.0%	0.0%	22.7%	65.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가 중요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의 대부분을 주관하는 기관이며, 이를 위해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국가R&D사업 불성실 중단과제의 사유별 환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사업비 부정사용	부도/폐업 /파산/화재	기술개발 불성실	연구 포기
환수완료 과제	0	0	6	1
미환수 과제	0	4	0	1
제재없는 과제	0	2	3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농지범용화시범사업¹⁾은 식량의 수급조절 기능 제고 및 다양한 농지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수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기금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농지범용화시범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지범용화시범사업	0	0	0	200	2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포함하여 50ha의 농지에 용·배수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반면, 농지범용화시범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등을 정비하여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논·밭 범용농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안은 4개 지구를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지관리기금 1160-351

[2020년도 농지범용화시범사업 계획안 편성내역]

4지구×50백만원= 2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2)에 따라 추진되며,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용수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지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3)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나 간척농지의 관리, 보수, 보강할 수는 있으나, 보통의 농지에 대한 용·배수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로도 볼 수 있고, 동 사업의 내용이 동 법에 따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제34조를 통해 용도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이는 농지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조~제13조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관리기금의 설치근거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농지범용화시범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가 포함된 50ha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범용화 관련 시설비를 보조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가 포함되는 필지여야 한다. 게다가 50ha 이상이라는 규모로 미루어볼 때, 농지의 소유주가 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농지범용화 사업을 위한 소유주 간의 의견을 합치하기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농가의 경작 품목이나 유형이 상이한 상황에서 50ha 이상의 농지를 일괄 범용농지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업부지의 확보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 실제 사업부지의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축사시설현대화(용자 및 보조)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¹⁾은 악취,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사회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산시설을 이전하여 규모화 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46억 2,500만원이 증액된 225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0	7,875	7,875	22,500	14,625	18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시행된 사업물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신중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2019년 사업시행경과를 보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공모(2019.3.28~6.14)하였고, 6월 3개 예비사업자(경북 울진, 강원 강릉, 충남 당진)를 선정(2019.6.28)하여 2019년 9월 현재 2개 지역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1개 지역은 최종계획서를 보완하고 있는 단계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60-332, 3760-34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조성비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 관제·교육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내에 위치한 축산 관련 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2019년 신규로 추진한 시범사업이 아직 사업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동 내역사업의 2020년 예산안에 2019년 선정된 3개소에 대한 2년차 사업비와 이들 지역에 모니터링 등 관제시설²⁾을 설치할 계획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20년에 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을 토대로 이에 대한 1년차 사업비 13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2019 계획액	2020 계획안
7,875백만원 기반조성 3개소×7,500백만원×보조70%×1년차 50%	22,500백만원 = 7,875백만원(기반조성 2년차 3개소×7,500백만원×보조70%×2년차 50%) + 13,125백만원(기반조성 1년차 5개소×7,500백만원×보조70%×1년차 50%) + 1,500백만원(관제시설 3개소×2,000백만원×보조50%×1년차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동 내역사업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특히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 선정된 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한 후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물량을 신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불용액	보조사업자				
				교부액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7,875	7,875	2,600	0	2,600	0	0	0	0.0

주: 2019년 9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생성되는 환경, 사육, 경영정보를 수집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시설로 계속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설

가. 현 황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¹⁾은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가실태조사 사업과,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잔류성 시험 분석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17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 지원	0	0	0	1,797	1,797	순증
농가실태조사	0	0	0	330	330	순증
잔류성시험분석	0	0	0	1,467	1,467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중 농가실태조사 사업은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은 축산물 PLS²⁾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은 2020년 동물용의약품 잔류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으로 시험동물구입비, 잔류성검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48

2) PLS란, Positive List System을 말한다.

[2020년도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0 예산안
농가실태조사	330백만원 = 11,000호 × 30천원 × 100%
잔류성시험분석	1,467백만원 = 22.5개 축종 × 65.2백만원 × 100%
합계	1,797백만원

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45개 품목 2,93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1,467백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액 기준에 따라 22.5개로 품목 수가 조정되었으며, 실제 사업시행 시는 계약단가 조정 등에 따라 품목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축산물 내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³⁾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PLS란, 농축산물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축산물(우유, 알 등 생산물 포함)에 남아있는 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전까지는 금지성분을 지정해놓고 해당 약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이었다면 PLS 방식은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 허용된 성분의 약품만 사용해야하는 방식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축산물은 판매금지 및 폐기 조치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전액 국고 지원할 계획인 반면, 해당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법」 제9조⁴⁾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의 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

3) 관계부처 협동,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2017.12.27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록,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료 채취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잔류성 검사 관련 사업을 시행할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에 대한 PLS 관련 규정 및 운용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농산물의 경우는 농약에 대한 PLS가 2019년 1월 1일자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⁵⁾되었는데, 농약의 잔류성, 약해 등을 시험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17조 4⁶⁾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잔류성에 대해 시험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에서의 PLS의 경우 2016년 12월 견과류, 열대과일류 등에 한하여 시행하였고, 2019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존사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을 시행할 전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PLS와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약효, 독성 등에 대한 시험을 면밀하게 시행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6)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현 황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¹⁾은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5억 2,5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0	0	0	525	525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내역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한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5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 70%, 지자체 30%의 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내역사업	2020 예산안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525백만원 = 실증포장 5개소 × 150백만원 ×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40-40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의 가능성과 생산량 감소, 지역 주민의 반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내역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한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국고 70%와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내역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작물 경작과 병행함으로써 하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설치된 태양광·풍력 발전 부지의 25%가 농지인 상황이며, 태양광 발전은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취약점이 있다는²⁾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 농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에 비해 환경훼손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였지만, 태양광패널을 지표면에서 높이 설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의 성격상 일정 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인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2016.12~2019.12)”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과정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전자파, 미관상의 이유로 민원(2017.05) 및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농지 소유주가 사업을 포기(2017.06)함에 따라 설치한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바 있으므로³⁾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지만 태양광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음영으로 인해 농작물의 웃자람 현상이 있었고, 농기계 작업 효율의 감소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⁴⁾ 특히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는 벼 20.3%, 감자 16.1%, 배추 7.3%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부 보도자료,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마련”, 2018.07.06

3)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 개발 1년차 연구보고서」, 2017.12

4)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 개발 1년차 연구보고서」, 2017.12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실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한 토지에 5개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을 실증할 계획으로 5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선행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한 후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의 가능성과 생산량 감소, 지역 주민의 반대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제28조⁵⁾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2조⁶⁾

5)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

는 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태양광 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른 농어촌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중 공공기관이나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⁷⁾만 허용된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최대 8년(5년, 추가 3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로 인해 동 사업의 선행연구인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2016.12~2019.12)”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 관련 업체와 나주시 간의 조율 끝에 나주시로부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전용 허가를 취득하였다.⁸⁾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나주시로부터

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探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7) 「농지법시행령」

제29조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8)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 개발 1년차 연구보고서」, 2017.12

취득한 일시사용의 협의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해야하며, 일시사용연장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8년에 불과하고, 사용기간 연장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철거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시설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한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업기술원이 영농형태 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요건에 대한 검토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동자원화시설¹⁾ 사업은 안정적인 분뇨 처리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퇴액비화²⁾³⁾, 에너지화 등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억 7,000만원 증액된 29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기 설치된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⁴⁾이다. 동 내내역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7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 다른 내내역 사업인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61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동자원화시설	10,850	14,350	14,350	29,820	15,470	107.8
바이오가스연계	0	0	0	7,000	7,000	순증
에너지화	0	7,350	7,350	16,100	8,750	11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5-329, 3735-330의 내역사업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공동자원화시설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계획액	2020 계획안
바이오가스연계	-	7,000 (1년차)4개소×5,000백만원×70%×50%
에너지화	7,350 (1년차)1개소×7,000백만원 ×70%×50%(1년차) (2년차)2개소×7,000백만원 ×70%×50%(2년차)	16,100 (1년차)4개소×9,200백만원 ×70%×50%(1년차) (2년차)1개소×9,200백만원 ×70%×50%(2년차)

주: 연차별 지원비율은 1년차 50%, 2년차 50%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사업대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성에 대한 추계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에너지화 사업 등과 달리 자부담이 없으므로 지원비율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1일 100~200톤 규모로 가축분뇨(1일 처리량 중 70~100%), 음식물폐기물(0~30%)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가스 이외의 잔여물은 액비 처리 후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전력 판매 수익금과 액비살포비⁵⁾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 등을 1일 100톤 바이오가스화 및 자원화 처리하는 시설을 20년간 운영할 경우 13억 4,400만원에서 131억 9,2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오가스의 생산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분석자료라는 점에서 바이오가스의 수익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가스의 수익성을 추계할 때, REC⁶⁾의 판매단가

5) 퇴액비유통전문조직이 부속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ha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를 7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REC는 2019년에 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9년 10월 기준 REC 평균 가격은 66,996원까지 하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C 거래가격]

(단위: 원/REC)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REC 거래가격	109,281	91,958	134,750	130,514	98,530	66,996

주: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가중 평균가격이다.

자료: 1.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 <http://onerec.kmos.kr>

2. 접속일자: 2019-10-14

REC 거래가격이 과다 계상될 경우,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을 통한 수익성이 과다 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추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축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가스의 약 88%가 이용되지 못하고, 소각 등 단순처리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⁷⁾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농가의 투입비용이나 경제성 등 사업의 추진에 따른 효과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추진타당성을 점검하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추진을 통한 비용 및 수익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의 재원을 구성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반면, 에너지화 사업 등과 달리 자부담이 없고⁸⁾ 민간이 보유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자부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자료: 전력거래소, 「2018년도 전력시장 통계」, 2019.5

7) 소진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전과정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8)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으로 구성된다.

둘째, 에너지화 사업은 주변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잔여물은 액비로 만드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동 내내역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가동실적은 6개소에 불과하고, 인허가 등 절차지연이 4개소,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년차 1개소와 2년차 2개소에 대한 예산 7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년차 사업은 9월 현재까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이고, 2년차 사업으로 편성된 49억원도 9월 현재 34억원이 교부된 반면 실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사업자 선정시 사업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주민 동의를 받아 즉시 착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2020년의 사업 추진 여건이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사업물량 중 신규로 선정할 개소수가 4개에 이르는 반면,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의 이행가능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검토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의 조정 및 이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안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에너지화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A)	집행액	보조사업자		
				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1년차	2,450	2,450	0	0	0	0.0
2년차	4,900	4,900	3,427	3,427	0	0.0
합계	7,350	7,350	3,427	3,427	0	0.0

주: 2019년 7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¹⁾은 노지에 영농을 하는 농업인을 집단화 및 단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3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		B-A	(B-A)/A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1,100	3,000	3,000	8,840	5,840	194.7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0	0	0	3,500	3,5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기초기반조성과 데이터수집활용(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분되며, 이 중 기초기반조성 예산안은 28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		B-A	(B-A)/A
기초기반조성	0	0	0	2,800	2,800	순증
데이터수집활용	0	0	0	700	7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76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재정지원방법, 사업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에 스마트 영농을 하는 농업인을 집단화 및 단지화하기 위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에는 2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1년차 사업비(40%)에 국비보조율(70%)을 반영하여 28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 물량은 2개소(식량작물 1품목, 원예작물 1품목)로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노지 스마트농업의 실현 및 확장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비목	산출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2개소×5,000백만원×40%(1년차)×국비 70%=2,8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20-01목)	1식×700백만원×국비 100%=7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의 기반정비 사업의 ha당 단가는 1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급수, 배수 시설 및 전기시설, 도로 포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비]

(단위: 백만원/ha)

구 분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중분류	소분류			
용수시설	수원저장시설(지표수)	0.2개소	15	저수용량 250톤/대
	관정(지하수)	0.2공	4	20백만원/공
	급수시설	0.1km	10	100백만원/km
기반시설	도로확포장	0.1km	10	10만원/m
	정지공사	0.5ha	12	25백만원/ha
	배수시설	0.1km	10	0.1백만원/m
	정수시설		8	2,000백만원/250ha
	전기인입	1식	11	50ha 기준 (전력설비용량 6,000kw, 옥외전력 간선설비 2km)
	통신인입	1식	10	50ha 기준 통신선로 인입
부대시설	관수자동화시설	1식	10	기동반, 저수조 자동화, 제어반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또 다른 세부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ha 당 단가는 약 5억원이며, 총사업비 100억원 중 70%를 국고 보조하여 용수, 전기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도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이 노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ha당 단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원예단지조성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재정지원방법,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및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구분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참여방법	각 도를 대상으로 품목별 협의체·농협·기업·대학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
지원조건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운영비의 경우 민간경상보조 100%)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품목	식량작물 1품목, 원예작물 1품목	시설원예
지원면적	약 50ha + α	17.5ha
사업목표	노동집약적·관행농법(경험) 위주 노지영농 방식을 ①ICT를 활용하여 생산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하고, ②데이터에 기반한 관측·수급예측 등 유통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설원예분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산업화를 위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내용	단지화에 필요한 용수·전기·인터넷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전기, 부지정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2020년 예산안	2,800백만원	8,925백만원
지원방법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자체보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은 대상 부지의 신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기반조성은 기존 품목 주산지의 농지형상을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스마트농작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기·통신·관정 등 스마트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용수·전기·토지 평탄화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 및 농업기반정비 사업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과정에서 서로 다른 회계로 추진할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업 총량에 대한 관리나 점검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특히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안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는 단지 조성 사업의 총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성격의 재정사업이 있다는 점과 2020년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간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용수·전기·통신 등의 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사업 등을 통해 기반을 정비하고, 노지스마트농업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노지채소에 대한 ICT 장비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시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 및 농업기반정비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구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농업기반정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회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참여방법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지원조건	(조사설계비)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사업비) 국고보조 80% 지방비20%	국고 80% 지방비 20%
지원품목	과수주산지 과수농가	집단화된 논과 밭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원면적	반경 3km이내 사업규모 30ha이상 지구 (수출단지 10ha이상)	(2019년 기준) 밭기반정비 6,228ha, 대구 확경지정리 4,912ha, 시군수리시설개보 수 6,253ha, 소규모배수개선 608ha, 논 의 밭작물재배기반지원 617ha
사업목표	2025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1,600ha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내용	용수공급, 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구축 조사설계비 포함	밭기반정비, 대구확경지정리, 시군수리 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논의 밭작물재배기반지원
2020년 예산안	21,18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업 2019년 예산안은 (지역)160,995백만원, (제주)16,840백만원, (세종)1,000백만원
지원방법	지방자치단체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¹⁾은 국내에 구제역 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70%)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8억 1,400만원이 증액된 2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융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1,589	4,706	4,706	23,550	18,814	399.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구제역백신제조시설은 사업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잔여 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18년 편성된 예산은 전액 이듬해로 이월되었고, 2019년 융자금도 아직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50의 내역사업

[연도별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융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예산액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7	1,193	1,193	1,193	0	1,193	0	1,193	0
2018	18,814	18,814	0	1,193	1,193	1,193	0	0
2019	4,706	23,520	0	0	0	0	-	-
2020	23,550							

주: 2019년 10월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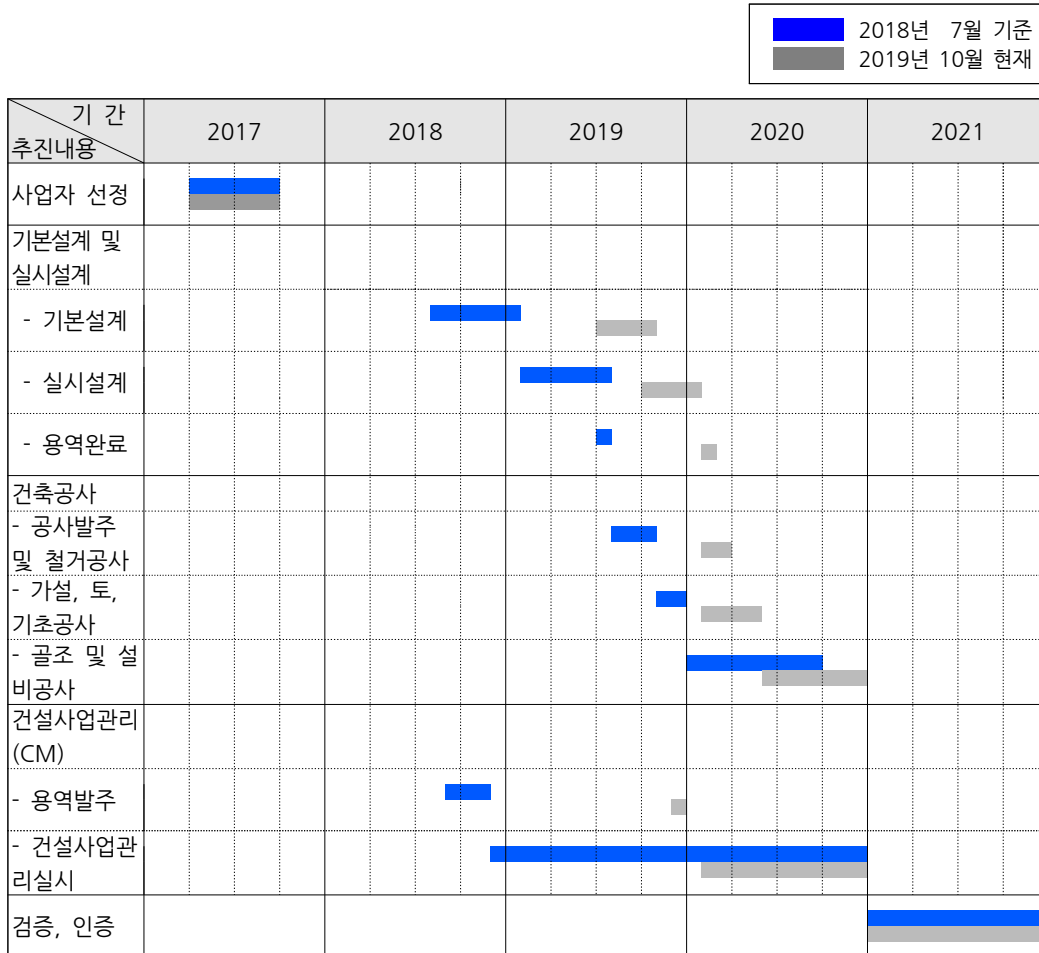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A는 2018년 12월 B건설회사와 턴키방식으로 설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B건설은 동 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업체와 일괄 계약하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현재 실시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동 사업은 2018년 12월 설계와 관련한 선수금이 지급된 이후 2019년 9월까지 설계비 잔액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2020년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공사 관련 현황]

구분	설계			공사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선정	2018.12.21	2018.12.21	2018.12.21	선정 예정
계약업체명	B건설	B건설	B건설	B건설
선수금지급	2018.12	2018.12	2018.12	2018.12
계약기간	B건설이 설계업체와 일괄 계약			2018.12~2021.12
종료	2019.6	2019.10	-	-
잔액지급	2019.6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 추진일정(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당초 2018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업설계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제조시설 신축 사업의 2020년 예산안에 구제역 백신제조 시설의 건설에 따른 비용(689억원)에 대한 4년차 사업비(336억원) 중 국비 소요액인 70%를 전액 편성하였다.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67,243×70%×10%(진척률) = 4,706백만원	33,648×70% = 23,55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 투자계획 대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차별투자계획(A)	1,704	26,877	6,718	33,648	68,947
국고용자	1,193	18,814	4,706	23,550	48,263
자부담	511	8,063	2,012	10,098	20,684
실제 반영현황(B)	1,193	18,814	4,706	23,550	48,26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를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2019년에도 예산현액 235억원 중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 예산안에 4년차 사업비를 전액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국내 민간제조업체가 구제역 백신에 관한 상용화 생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며, 구제역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한 제품과 경쟁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수입제품과 동등한 효능의 제품을 생산해야하는 취약점³⁾이 있다.⁴⁾

따라서 집행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서 계획한 공사 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용자 소요를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9, p.33

3)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백신 생산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2016

4)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에 관한 기술축적이나 상용화 생산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나,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와 기 체결(2018.7.12.)된 기술이전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구제역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기술이전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¹⁾은 분야별 및 전공별 특수대학원의 설립 등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1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R&D)	0	0	0	13,148	13,148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²⁾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현안해결 리빙랩프로젝트	0	0	0	2,000	2,0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0-474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0-475

나. 분석의견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 협약체결 할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 준비를 전제로 12개월분의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착수하는 다년도 과제에 대하여 12개월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20년도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교육훈련 : (다/상) 2개×2,000백만×12/12=4,000백만원
- 산업기반연구지원 : (다/상) 20개×100백만×12/12=2,000백만원
- 연구지원 : 농림축산식품 핵심기술개발 및 농업 R&D 전문 인력양성 6,752백만원
 - 산출내역 : (기일치) 3개×973백만×12/12=2,920백만원
 - (계속) 3개×953백만×10/12=2,374백만원
 - (종료) 3개×972백만×6/12=1,458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2,752백만×3.0%=396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착수하는 다년도 과제에 대하여 12개월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3)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4., p.33.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2020년도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R&D)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농업시설·기반환경개선)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등 해결방안 모색 1,080백만원
 - 산출내역 : (다/상) 6개 × 140백만 × $\frac{12}{12}$ = 840백만원
(단/상) 12개 × 20백만 = 240백만원
- (농촌생활환경개선) 축산 악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 920백만원
 - 산출내역 : (다/상) 6개 × 113백만 × $\frac{12}{12}$ = 680백만원
(단/상) 12개 × 20백만 = 24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체적으로,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의 사업기간과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각각 4년, 3년이고, 두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다년도 과제에 대하여 12개월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1년차 예산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기술창의인재양성 사업은 특수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12개월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R&D) 사업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12개월분의 예산안 중 3개월분의 사업비는 본 과제를 지원하기 전 사전기획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의 규모가 확정된 후 편성된 재원을 토대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함이며, 충분한 공모 기간을 제공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펀드 수익금 배분액의 국회 보고 절차 마련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3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구매이행보증보험 연례적 수요 부족을 감안한 집행관리 철저 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7
3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되는 농촌재능사업의 차별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3
4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적립금을 활용한 새만금지구 유지관리비 정부 예산 부담 완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6
5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원부 관련 예산의 정보화 사업 이관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0
6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가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예산의 낙찰차액 적정 사용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4
7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을 통한 지원대상인 사회적농업 범위의 명확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27
8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다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개선방안 강구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33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PTERR 비축미의 사료 방출 과다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37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거래 및 사이버거래소 관련 정보시스템 비용의 정보화 사업 이관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40
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안테나숍의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45
1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인증, 현지화 등 수출 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50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시설 현대화 용자 자금의 연례적 수요 부족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53
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56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임의자조금단체의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59
16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유사 농업 관련 박람회, 행사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63
17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기자재 수출 지원 사업의 연계·관리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66
18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박람회 지원 사업 등 조정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70
1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신청사 건립 사업추진 지연을 감안한 집행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73
20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해외인턴십 사업의 채용 연계 강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76
2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생명 산업화 사업과 차별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79
2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교육훈련 및 산업기반연구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82
2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청년식품창업 Lab 사업의 지원대상 가점 변경 필요 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85



해양수산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25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57억원(2.7%)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1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2,04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6억원, 수산발전기금 6,29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78,735	346,122	346,122	296,401	△49,721	△14.4
- 일반회계	162,131	67,419	67,419	51,306	△16,113	△23.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251	26,115	26,115	27,023	908	3.5
- 교통시설특별회계	190,447	239,294	239,294	204,547	△34,747	△14.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51	3,833	3,833	3,839	6	0.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555	9,461	9,461	9,686	225	2.4
기 금	545,977	605,026	605,026	629,081	24,055	4.0
- 수산발전기금	545,977	605,026	605,026	629,081	24,055	4.0
합 계	924,712	951,148	951,148	925,482	△25,666	△2.7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5조 4,94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060억원(3.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7,129억원,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4,82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5,49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43억원, 수산발전기금 5,285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549,984	4,674,548	4,775,886	4,966,257	190,371	4.0
- 일반회계	1,785,785	1,707,202	1,711,590	1,712,945	1,355	0.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27,123	1,128,354	1,151,654	1,481,981	330,327	28.7
- 교통시설특별회계	1,357,094	1,379,238	1,452,888	1,549,363	96,475	6.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3,127	62,644	62,644	67,679	5,035	8.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6,855	397,110	397,110	154,289	△242,821	△61.1
기 금	490,840	505,019	512,919	528,512	15,593	3.1
- 수산발전기금	490,840	505,019	512,919	528,512	15,593	3.1
합 계	5,040,825	5,179,567	5,288,805	5,494,769	205,964	3.9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6,41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15억원(5.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5,49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7억원이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2,131	67,419	67,419	51,306	△16,113	△23.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251	26,115	26,115	27,023	908	3.5
교통시설특별회계	1,360,023	1,379,238	1,452,888	1,549,363	96,475	6.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51	3,833	3,833	3,839	6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555	9,461	9,461	9,686	225	2.4
합 계	1,548,311	1,486,066	1,559,716	1,641,217	81,501	5.2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3,11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546억원(4.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57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4,82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5,494억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67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43억원이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71,309	2,847,146	2,851,534	3,057,761	206,227	7.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55,801	1,269,033	1,292,333	1,481,981	189,648	14.7
교통시설특별회계	1,357,094	1,379,238	1,452,888	1,549,363	96,475	6.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3,127	62,644	62,644	67,679	5,035	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6,855	397,110	397,110	154,289	△242,821	△61.1
합 계	5,464,186	5,955,171	6,056,509	6,311,073	254,564	4.2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산발전기금으로만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594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1,069억원(14.2%) 증가하였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산발전기금	542,908	752,481	752,481	859,358	106,877	14.2

주: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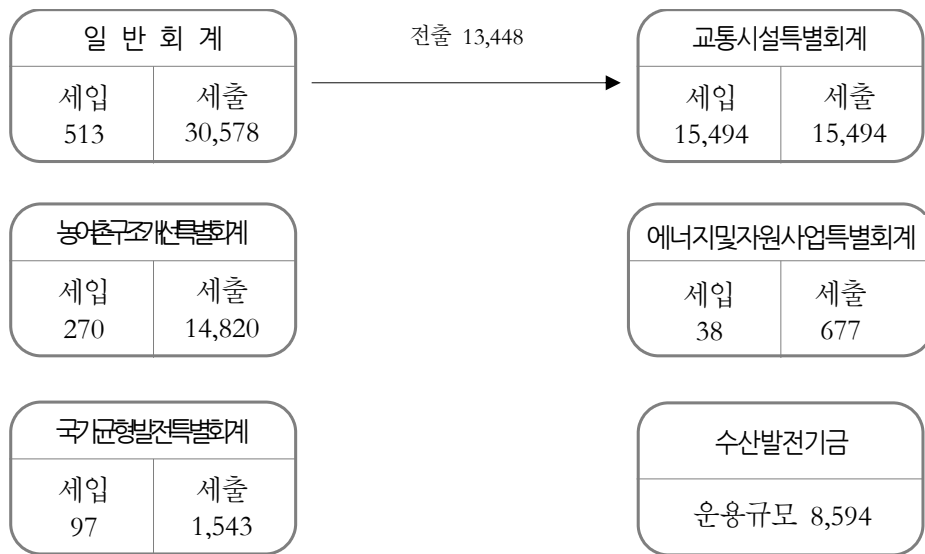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3,448억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항만지역 미세먼지 감소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항만 육상전력공급설비 및 친환경어구 보급 물량을 확대 추진하고(2019년 925억원 → 2020년 2,176억원) ②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을 증액하고(2019년 1,729억원 → 2020년 3,981억원), ③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2019년 333억원 → 2020년 942억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④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뉴딜300 사업은 관련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계획서 심의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은 예산심의 시 1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 선박이 감소할 경우 잔여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사업은 기술별·품종별 첨단친환경양식기술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89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연안여객선교통약자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에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전용좌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R&D)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없는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 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사업은 수산물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에 직거래 활성화, 산지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항만 육상전력공급설비구축사업은 부두에 접안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모든 선박에 육상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하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9개)	해양공간 통합관리	2,226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1,122
	해양수산 재난 관리지원	1,200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200
	극지유전자원 활용기술개발(R&D)	2,500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R&D)	7,50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R&D)	7,500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564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3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5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394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485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350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4,020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1,638
교통시설 특별회계 (6개)	항만 육상전력공급설비 구축	26,400
	부산항 신항만(3단계)	3,119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1,600
	항만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플랫폼 기술개발 (R&D)	5,500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	3,737
	해양PNT 고도화 기술개발(R&D)	6,195
합 계		89,550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어촌뉴딜300,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연근해어선 감척,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친환경 어구보급 등이 있다. ① 어촌 뉴딜300 사업은 300개의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에 이어 2020년에 10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사업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세월호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③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업자원 회복 및 한일어업협정을 위한 대일본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감척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④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다지킴이 확대운영, 정화운반선 건조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⑤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어구·친환경부표 보급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이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개)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250	250	7,613	7,363	2,945.2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510	510	6,705	6,195	1,214.7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	2,500	2,500	11,000	8,500	340.0
	어업지도정보화(정보화)	158	158	616	458	289.9
	관공선건조 및 운영	4,946	9,334	18,085	13,139	140.8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 촉진사업(R&D)	2,000	2,000	5,700	3,700	185.0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R&D)	4,500	4,500	12,684	8,184	181.9
	선박배출 오염예방	1,040	1,040	2,790	1,750	168.3
	해양환경정보(정보화)	340	340	875	535	157.4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R&D)	5,480	5,480	13,748	8,268	150.9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1,833	1,833	4,383	2,550	139.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정보화)	1,067	1,067	2,528	1,461	136.9
	해양관광육성	12,844	12,844	29,740	16,896	131.5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5,450	5,450	11,550	6,100	111.9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4,030	4,030	8,536	4,506	111.8
	항만 YT 친환경 ING 전환사업	1,200	1,200	2,485	1,285	107.1
	수산전문인력 양성(R&D)	2,789	2,789	5,775	2,986	107.1
	해양생명자원조사	300	300	600	300	100.0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1,000	1,000	1,900	900	90.0
	연안선박현대화 지원	35,800	35,800	67,700	31,900	89.1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 개발(R&D)	6,714	6,714	12,672	5,958	88.7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250	250	450	200	80.0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	4,980	4,980	8,352	3,372	67.7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R&D)	2,900	2,900	4,532	1,632	56.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19,001	19,001	28,028	9,027	47.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R&D)	4,370	4,370	6,223	1,853	42.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090	1,090	1,510	420	38.5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7,320	7,320	10,078	2,758	37.7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753	3,753	5,153	1,400	37.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R&D)	3,335	3,335	4,562	1,227	36.8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R&D)	4,000	4,000	5,471	1,471	36.8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900	900	1,230	330	36.7
	해양환경교육 운영	2,592	2,592	3,492	900	34.7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4,949	4,949	6,501	1,552	31.4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3,089	3,089	4,045	956	30.9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총액)	1,146	1,146	2,049	903	78.8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211	211	279	68	32.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9개)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61	261	1,352	1,091	418.0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1,500	1,500	5,404	3,904	260.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33,272	33,272	94,150	60,878	183.0
	어촌뉴딜 300	172,850	172,850	398,148	225,298	130.3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R&D)	3,400	3,400	7,101	3,701	108.9
	친환경 어구보급	10,400	10,400	18,715	8,315	80.0
	연안국과의 협력(ODA)	10,473	10,473	15,820	5,347	51.1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2,632	2,632	3,922	1,290	49.0
	양식어업재해보험	39,600	39,600	51,868	12,268	31.0
교통시설 특별회계 (17개)	부산항 신항만 서컨(1단계) 배후단지	500	500	12,340	11,840	2,368.0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3,000	3,000	22,000	19,000	633.3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R&D)	5,242	5,242	19,075	13,833	263.9
	부산항 신항만(1단계)	11,159	11,159	32,836	21,677	194.3
	부산북항 재개발	7,673	7,673	22,412	14,739	192.1
	기타항만 재개발	4,815	4,815	13,587	8,772	182.2
	인천남항	1,835	1,835	4,608	2,773	151.1
	목포북항	1,018	1,018	2,500	1,482	145.6
	인천신항	35,103	35,103	74,381	39,278	111.9
	여수신북항	21,935	21,935	45,939	24,004	109.4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14,909	14,909	26,038	11,129	74.6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	16,878	16,878	27,426	10,548	62.5
	홍도항	2,750	2,750	4,450	1,700	61.8
	목포항	400	400	570	170	42.5
	동해항 3단계 개발	132,213	153,213	187,427	55,214	36.0
	울산신항	93,622	99,622	132,375	38,753	38.9
	군장항(2단계)	17,936	18,186	24,929	6,993	38.5
수산발전 기금 (3개)	원양어선안전관리	5,000	5,000	13,000	8,000	160.0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0,870	10,870	24,681	13,811	127.1
	바통화금융기관예치(수산발전기금)	230,277	230,277	330,846	100,569	43.7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개)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11,316	11,316	15,408	4,092	36.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2개)	제주외항(2단계)	372	372	5,435	5,063	1,361.0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5,881	5,881	10,746	4,865	82.7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하여 2019년 8월 현재 12개 어종¹⁾, 14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어업허가, 어구·어선 제한, 금어기 등 어업활동을 통제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인 어획노력량관리(Input control)와 달리 어획량 자체를 규제하는 Output Control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TAC 제도와 관련하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사업²⁾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1,900만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사업³⁾에 수산자원조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억 1,1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⁴⁾에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업종에 대한 어선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32억 2,800만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⁵⁾에 82억 7,400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31-341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04

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2-300

5)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00

[2020년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2,502	2,024	2,024	1,974	△50	△2.5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	20	20	20	19	△1	△5.0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75,869	78,088	78,088	71,213	△6,875	△8.8
총허용어획량제도운영	2,861	3,117	3,117	3,611	494	15.8
자율관리어업 육성	7,185	10,200	10,200	10,200	0	0.0
TAC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	0	3,228	3,228	3,228	0	0.0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8,274	8,274	8,274	8,274	0	0.0

자료: 해양수산부

1-1. TAC 적용 대상 어종·업종 확대의 기반 마련 필요

가. 현 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⁶⁾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할 수 있으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관한 시행계획(이하 “TAC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어업인 11명 이내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어업인과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TAC계획을 수립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체 어획량의 50%, 2030년까지 전체 어획량의 80%에 대하여 TAC 관리 어종·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⁷⁾ 2017년 어기⁸⁾ TAC 관리 대상은 전체 어획량의 25% 수준이다.

6) 「수산자원관리법」

-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해양수산부, “수산혁신 2030계획”, 2019.2

나. 분석의견

TAC 적용 대상 어종·업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제도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이 TAC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전문가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어업인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TAC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TAC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어업인의 수용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⁹⁾

TAC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직권으로 적용 대상을 지정할 수 없고 제한적인 범위에만 시행되고 있어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산혁신 2030계획 상 TAC 적용 대상 어획량 목표와 최근 실적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TAC 대상어종은 어획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에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¹⁰⁾와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TAC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위하여 어업인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기초가 됨을 전제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TAC 적용 어종·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말 현재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TAC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¹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TAC 적용이 필요한 어종을 선정하고, 해당 어종 어획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 TAC를 적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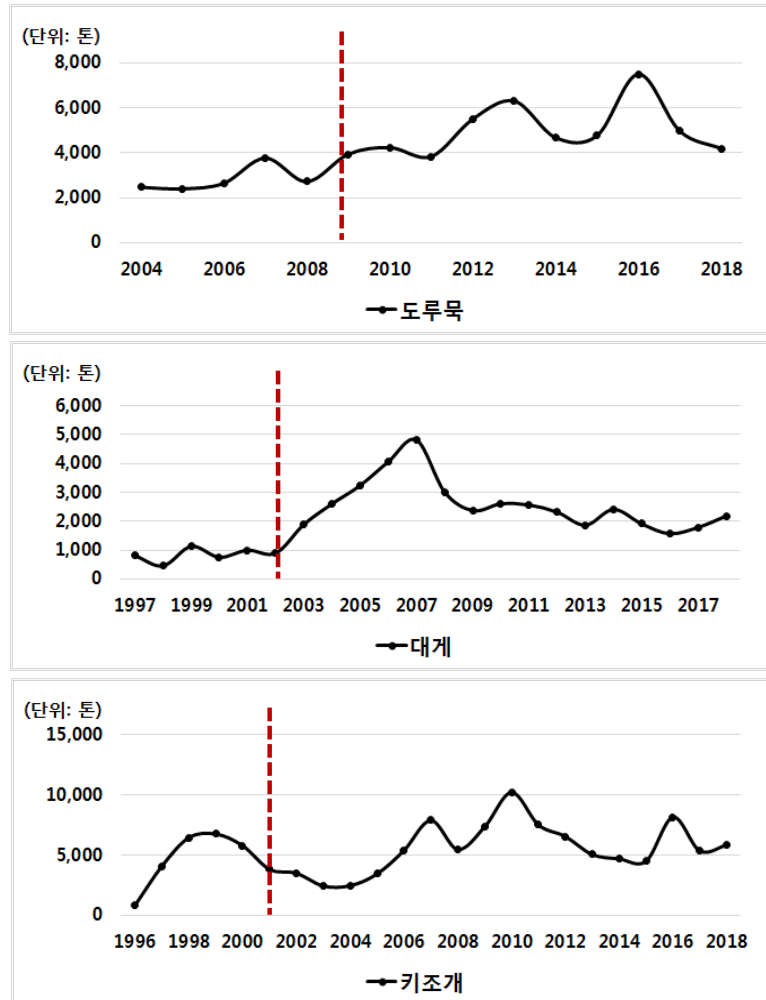
8) 2017년 1월~2018년 6월

9) 예컨대 오징어의 경우 2018년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 업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TAC 적용 업종(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대형선망)의 반발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업종과의 협의·설득을 통하여 2019년부터는 쌍끌이대형저인망 업종에도 TAC를 적용하고 있다.

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2019

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2019.7.19.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추이]



주: 붉은 점선은 TAC 적용 시기를 나타낸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2019.

1-2.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 가능성 검토

가. 현 황

TAC 제도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2,502	2,024	2,024	1,974	△50	△2.5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	20	20	20	19	△1	△5.0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75,869	78,088	78,088	71,213	△6,875	△8.8
총허용어획량제도운영	2,861	3,117	3,117	3,611	494	15.8
자율관리어업 육성	7,185	10,200	10,200	10,200	0	0.0
TAC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	0	3,228	3,228	3,228	0	0.0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8,274	8,274	8,274	8,274	0	0.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예산심의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TAC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C 제도 관련 예산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어획량 조사·관리를 위한 수산자원조사원 인건비, TAC 적용 업종에서 자원관리를 위하여 조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어선원 인건비 일부 지원, TAC 참여어업인의 경영개선자금 융자 등이다. 이 중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 내용상 독립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고, 동일 회계에서 TAC 제도 운영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각의 내역사업들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3. 총허용어획량 설정·배분 및 어획량 조사·관리 등 제도운용 개선

가. 현 황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기반하여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시·도는 이를 다시 각 어선에 배분한다.

TAC 배분량을 할당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 장소(이하 “지정위판소”)에서 대상 어종을 매매·교환하여야 하며,¹⁾ 2019년 9월 현재 121개 위판소가 지정되어 있다. TAC 소진량 관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배치된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TAC 대상 어종의 어획량, 체장 등을 조사·보고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TAC 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TAC 설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자원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조사 데이터 수집·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TAC 할당량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와 어업인의 수용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9년 9월 현재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은 3척, 전담연구인력은 12명으로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자원조사·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²⁾인 것으로 보이는

1)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조사선은 22척, 전문인력은 102명이다.

바, 인접국 경계해역에서의 자원조사 결과를 국가 간 공유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수산자원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AC 총량이 정해지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80%)과 조업어선 척수·톤수(20%)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하고, 시·도는 이를 각 어선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주된 기준으로 할 경우 날씨·어업인의 건강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다음 어기의 TAC 배분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5년간 어획량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TAC 적용 대상의 확대 방침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어획량 조사·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19년 현재 121개 지정위판소에서 어선별 어획량 등을 조사·관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정원은 95명으로, 한 사람이 2개소 이상의 지정위판소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사원이 상주하는 위판소라도 조사원의 업무시간 외 시간에 TAC 할당량을 소진한 어선이 위판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TAC 제도에 충실히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TAC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수산자원조사원은 TAC 대상 어선 수와 할당량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는데, TAC 대상 어선 수 대비 지정판매장소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원 1인당 지정판매장소가 평균 2개소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지정판매장소 수, 1인당 관리 가능한 어선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TAC 할당량 관리 현황]

(단위: 개소, 척, 톤, 명)

권역별	합계	부산	울산 경북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정판매장소	121	8	20	9	21	22	15	19	7
TAC 대상 어선	1,374	181	401	125	105	37	78	308	139
'19년 어기 TAC 할당량	289,643	167,358	57,902	6,388	24,519	7,529	5,356	7,942	2,447
수산자원조사원	95	15	18	6	10	10	14	12	10

자료: 해양수산부

셋째,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직접 어획물의 혼획비율³⁾ 산정, 몸길이 측정 등을 통하여 어획량을 조사하고 이를 수기로 입력·취합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1회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조사원이 휴대폰 등으로 어선별 어획량을 수산정보포털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를 관계기관과 어업인이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자원 관리나 어업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TAC 생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영상장비를 통한 어획물 채장·체중 측정 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TAC 대상 어선의 어획물에는 TAC 대상 어종 외에도 여러 어종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각 어종의 비중을 개산하여 TAC 대상 어종의 어획량을 산정한다.

어촌뉴딜300 사업¹⁾은 300여개의 어촌·어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²⁾과 소규모 항포구, 배후 어촌마을이 포함되며, 개소당 평균 총사업비 100억원 수준에서 국비 70%를 보조한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대상지 70개소와 신규 100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252억 9,800만원이 증액된 3,98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어촌뉴딜300	0	172,850	172,850	398,148	225,298	130.3

자료: 해양수산부

2-1. 어촌·어항법 상 관련 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가. 현 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법」 제4조³⁾에 따라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47조의²⁴⁾에 따라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45-310

2) 단, 국가어항은 제외된다.

3)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0.2.28.)

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9월 현재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 중이며, 2020년에 「제1차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018년 말까지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현재까지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⁵⁾, 2020년 중 「제1차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의 인프라개선 및 재생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기본계획 및 재생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생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사전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한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가. 현 황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전 대상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통사업, 공모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지역협업체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 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된다.

5) 당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2017.12.18.~2018.12.31.이었으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2019년 9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사항(2020.2.28. 시행)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어촌·어항 개발사업과 달리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단기간에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검토하고 상향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기 보다는 해양수산부의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유사·중복적인 SOC 사업 위주로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실제 2019년 사업대상지 70개소의 예비계획서 상 특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책로·전망대·포토존 조성, 낚시체험장 조성, 갯벌체험 등 특정 유형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계류시설 또는 가공시설·유통시설 조성 등 특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⁶⁾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는 다양한 사업형태를 독려하기 위하여 4가지 유형분류를 삭제하고 유형의 제한 없이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다채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4가지 유형별 특화사업 예시]

유형	특화사업 예시
해양레저형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해중 전망대
국민휴양형	바다전망대, 갯벌생태공원 조성, 생태놀이터
수산특화형	바다낚시터, 어부장터, 수산특화거리
재생기반형	청년창업지원센터,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간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 2018.9.13.을 바탕으로 재작성

6) 해양수산부는 2019년 9월 현재 사업대상지 70개소 중 60개소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를 실시하여 40개소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

[2019년 사업대상지의 특화사업 사례]

특화사업 주요내용		지역·항명
유사 사례	산책로·전망대	부산 기장군 동암항, 인천 옹진군 답동항, 경기 화성시 백미항,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전남 강진군 서중항, 전남 고흥군 선정항, 전남 고흥군 덕흥항, 전남 광양시 와우포구, 전남 보성군 동율항, 전남 신안군 하우리항, 전남 신안군 만재항, 전남 영광군 법성항, 전남 영광군 법성항, 전남 장흥군 노력항, 전남 진도군 창유항, 전북 군산시 명도항, 경남 고성군 입암항, 경남 남해군 동갈화항, 경남 창원시 명동항, 경남 창원시 주도항, 경남 통영시 진촌항, 경남 하동군 술상항, 경남 하동군 중평항, 경북 울진군 석호항
	낚시터	인천 옹진군 야달항, 인천 중구 소무의항, 울산 동구 화암항, 전남 신안군 생깁항, 전남 여수시 월호항, 전남 완도군 가학항, 전남 함평군 함평항, 강원 고성군 반암항
	갯벌체험	전남 영광군 법성항, 전남 함평군 함평항
특화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가공·유통시설	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전남 해남군 두모항, 전남 해남군 구성항
	여객편의시설	전남 완도군 솔지항, 경남 통영시 가오치항

주: 사업공모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서의 내용에 바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자료: 해양수산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국비 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¹⁾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위판장 내 저온경매장 3개소,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 8,500만원이 반영되었다.

[2020년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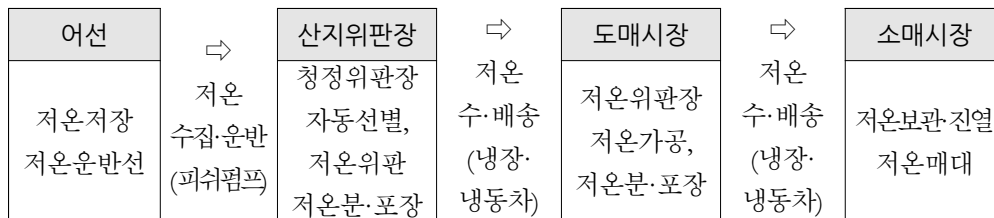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2020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0	0	1,485	1,485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저온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에 위판되어 출하되기까지는 크게 ‘수산물 분류 → 경매 → 도매인의 재포장·단순가공 → 출하’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동선별기를 도입하여 수산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산물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경매장에 폐쇄형 공간 구축과 저온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수산물 저온유통 체계도]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0-317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관련 법령과 사업효과의 주된 수혜자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위판장에 저온경매장 설치 시 50%,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구매 시 30%를 보조한다.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전체 위판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45개 위판장에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 저온경매장 설치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편성되어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따른 ‘농산물유통 개선’ 기준보조율은 40%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서는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모두 국비 30%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온경매장 1개소 당 구축비는 30억원으로 계획대로 총 45개의 시설을 구축할 경우 총 1,3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므로 신규 편성단계에서 국비 보조율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가. 현 황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¹⁾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6조²⁾에 따라 해양안전 인식 제고,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하여 전라남도 진도군에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28억 1,799만원이 반영되었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개요]

구분	규모	주요시설	총사업비	운영비
국민해양안전관 (전남 진도)	연면적 7,155㎡, 지하1층/지상4층	해양재난대응관, 해양생존체험, 추모관 등	270억원 (국비 100%)	국비 100%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13,811	14,853	14,853	14,740	△113	△0.8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5,638	4,694	4,694	2,817	△1,877	△40.0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6332-302의 내역사업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나. 분석의견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은 2015년 이후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2회계연도 이상 이월 후에도 집행하지 못하여 국고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월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심의·의결이 2017년 4월 완료되어 2017년 8월부터 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실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에는 2017~2018년 교부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46억원 중 8월 말 기준 7억원을 실집행하였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추진계획]

구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당초	수정('19.5)	수정('19.10)
설계	~2016	2017.8~2019.1	2017.8~2019.4
건립	~2018	2019.6~2020.12	2019.10~2021.4
전시물 설치·시범운영	-	2020.12~2021.3	2021.1~2021.11
개관	2019~	2021.4~	2021.12~

자료: 해양수산부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의 교부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8월
국민해양안전관	2015년 200 교부	전액 이월	165 집행 35 재이월	35 집행	-	-
	2016년 4,252 교부	-	전액 이월	736 집행 3,516 이월	2,353 집행 1,163 반납요청	-
	2017년 5,174 교부	-	-	전액 이월	전액 재이월	696 집행
	2018년 5,638 교부	-	-	-	전액 이월	-
	2019년 3,797 교부	-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에는 농림지역인 사업부지의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시설계 완료가 추가적으로 지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10월 중 착공하여 2021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9년 10월 중 공사계약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계획기간 내 착공이 불투명하고 2017~2018년 교부 예산의 반납 및 재이월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0년 예산안에는 잔여사업비 중 2021년 준공소요 5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편성된 바, 예산심의 기간 중 사업 추진경과, 공사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고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³⁾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2	43	52	56	39	28	51	270

주: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교부액 중 2018년까지 집행하지 못한 11.6억원이 국고반납될 경우 2021년 예산안에 반납분을 다시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 해양수산부

3) 2021년 예산안 편성 계획인 51억원은 전시물 설계 및 설치비용(48.7억원) 일부와 공사비 준공소요를 위한 내용이다.

가. 현 황

연근해어선감척 사업¹⁾은 수산자원 보호와 연안·근해어업 갈등 해소를 위하여 연근해어선을 감축하고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66척(700억원)과 국내 조업어선 54척(242억원) 감척을 목표로 전년대비 608억 7,800만원이 증액된 94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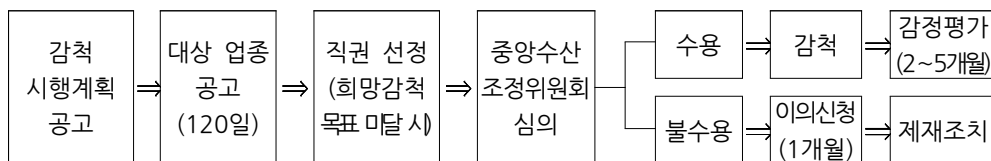
[2020년도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연근해어선감척	16,567	33,272	33,272	94,150	60,878	183.0

자료: 해양수산부

[연·근해 어선 감척 추진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2020년 예산안이 기본계획 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2019년 예산액 대비 크게 증액 편성된 바, 중기계획과의 정합성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 4월 공고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2019~2023)」에 따르면 현재 연근해어선 세력은 적정 수준 대비 9.8% 과다한 것으로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5-300

로 평가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9~2023년 동안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동 기본계획 상 2019~2023년 소요예산은 1,079억원, 2020년 소요예산은 193억원인데, 2020년 예산안에는 계획액 대비 4.9배, 5년간 소요예산 총액의 87.3%에 달하는 942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2023년 기간 중 연근해어선 감척 계획]

(단위: 척)

업 종	어선척수	감척척수	비 고
대형트롤	52	18	오징어 자원 보호
동해구트룰	37	14	오징어 자원 보호
기타 근해어선	2,641	268	대형선망, 소형선망, 안강망, 연승, 기선권현망, 기타 인망류 등
연안+구획	39,013	1,000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합계	41,743	1,300	

자료: 해양수산부,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 2019.4

[중기재정계획 상 어선·어구 감척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33,272	19,328	18,748	18,373	18,189	107,91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제주 갈치연승 40척 등 총 66척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국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트롤어선 등 54척(근해어선 13척·연안어선 41척)을 감척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은 2016년 이후 지속되어 온 문제이며 제2차 연근해어선 구조개선 기본계획은 2019년 4월 수립된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예산안에서 기본계획 대비 큰 폭의 증액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²⁾

2)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금년 하반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어업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당초 2021~2023년으로 계획되었던 한·일 어업협정 관련 감척물량을 2020년으로 당겨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근해 어선 감척 방식 개요]

업종	시행주체	감척방법	지원내용		제재조치
			차이점	공통사항	
근해어선	해수부	희망	기초가격 ¹⁾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평가액, 생활안정자금	감척사업 참여 제한(3년)
		직권	개별평가 ²⁾ (폐업지원금)		면세유 등 축소 ³⁾
연안어선	지자체	희망	기초가격(폐업지원금)		감척사업 참여 제한(3년)
		직권	개별평가 (폐업지원금×국비 80%)		면세유 등 축소

주: 1) 감척 사업 지침단가 기준

2) 평년수익액의 3년분 × 90%

3) 용자 한도액 및 면세유 공급량을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30%, 3년차부터 50%를 축소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 감척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희망감척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되 필요에 따라 직권감척을 실시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월 감척대상어업을 공고하고(15일 간 공고), 희망감척 신청을 접수받아 감척을 실시³⁾한다. 당초 계획에 따른 희망감척이 감척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척수에 대해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여 고지(120일 간 공고)하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개별평가(2~6개월 소요) 등 필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각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감척에 대하여 어업인이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경우 이의신청(1개월 이내) 기간을 두고 있고 면세유 제한 등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수용을 유도하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수용도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해양수산부는 희망감척의 경우에도 기초가격을 폐지하고 개별평가에 의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 현 황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¹⁾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 시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수산자원 및 외국어선 동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후 한일어업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406척에 대하여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0	2,057	2,057	2,467	410	19.9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류비 보전비율과 1척당 지원 상한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2020년 계획안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업종별 연간 유류비 및 일본수역 의존도에 근거하여 일본수역 조업어선 1척당 평균 유류비를 산출하고, 이에 ‘평균유류비 지원율’ 25%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평균유류비 지원율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정 여력 등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167-317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2020년 계획안 산출내역]

$$2020년 \text{ 예산액 } 2,467\text{백만원} = 1\text{척당 평균유류비}(24.3\text{백만원}^1) \times \text{지원대상}(406\text{척}) \\ \times \text{평균유류비지원율}(25\%)$$

주: 1) 최근 3년 기준 일본수역 조업 어선의 1척당 평균 유류비 = 11,888백만원 / 487척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의 경우 당초 사업지침에 따른 업종별 유류비 지원 상한액은 300~4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6월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상한액을 431~57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380척²⁾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2020년 계획안에서 1척 당 평균 지원액은 608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19년 9월말 현재 2020년 사업지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수역 조업어선 감척³⁾ 등으로 지원 대상 선박이 감소할 경우 연도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하여 1척당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업종별 유류비 지원 상한액]

(단위: 천원)

구분	선망	연승	오징어	중기저	외출	공치
2019년(당초)	4,000	4,000	3,150	3,150	3,000	3,800
2019년(개정)	5,745	5,745	4,530	4,530	4,310	5,460

주: 2019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어선 1척당 지원 상한액은 동 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지원 대상 선박 수가 변동할 경우 잔여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가 추진경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 보전비율 또는 1척당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 제외 선박 발생 등에 따른 잔여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 2015년 일본수역 조업어선 406척 중 불법조업 어선으로 단속되거나 해당 연도 조업실적이 없는 등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6척을 제외한 실제 지원 선박 수이다.

3) 해양수산부는 2020년 중 일본수역 조업어선 66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가. 현 황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¹⁾은 조업중 유실되어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분해성어구와 나일론어구의 가격 차액에 대하여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원이 증액된 7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친환경어구보급	9,400	10,400	10,400	18,715	8,315	80.0
생분해성어구보급	5,200	5,200	5,200	7,715	2,515	48.4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25억원(48.4%)을 증액한 77억원을 편성하였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03의 내역사업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4,605	4,605	4,605	4,605	0	4,605	3,293	549	763	71.5
2017	4,605	4,605	4,605	4,605	549	5,154	3,167	585	1,402	68.8
2018	5,200	5,200	5,200	5,200	585	5,785	3,497	773	1,515	67.3
2019.8.	5,200	5,200	5,200	5,200	773	5,973	2,347	0	0	45.1

자료: 해양수산부

국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하여 생분해성 어구 성능 향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8년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의 실집행률은 67.3%로 전년대비 오히려 1.5%p 하락했다.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 개량연구²⁾, 어업인 대상 우수사례 발표 등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2018년까지 보급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대게어망 등 특정 유형에 보급이 집중된 현 상태로는 보급률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업인 간담회 개최결과 등을 고려하여 집중 보급목표 어종을 선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기준³⁾ 상향 조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실용화기술과제(예산 총 25억원)로 2016~2020년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3) “생분해성어구 가격 - 나일론어구 가격 + 나일론어구 가격의 10%”를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한다. 2019년 기준 대게자망의 생분해성어구 가격은 60,200원, 나일론어구 가격은 25,100원으로 보조금액은 37,610원, 자부담액은 22,590원이었다.

가. 현 황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¹⁾은 항만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선박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 관리 항만에 대한 설비 구축은 직접 수행하며, 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설비 구축은 국고로 40%를 보조한다. 관련 사업이 2018~2019년 동안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²⁾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에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264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0	0	0	26,400	2,6400	순증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0,7381	135,274	138,674	130,101	△8,573	△6.2
육상전원공급설비 인프라구축	384	0	3,400	0	△3,400	순감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18~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0년에 집행가능한 예산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8~2019년 기간 동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90억원과 3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 예산의 2018년 말까지 집행실적은 3억 8,400만원(4.3%)이고 2019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54억 2,600만원(60.3%)이며, 2019년 예산은 8월말까지 집행액이 없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5063-305

2)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5050-300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2018년 말	2019년 8월말
2018	0	9,000	384	5,426
2019	0	3,400	-	0

주: 2018~2019년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관련 예산은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에 편성됨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0년 예산안에 2019년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준공 소요 230억원(국가관리 175억원, 항만공사관리 55억원)과 2020년 신규 사업의 설계 및 착공소요 34억원(국가관리 5억원, 항만공사관리 29억원)을 반영하였는데, 2019년 추진 사업 중 국가관리 항만의 9개 선석에 대한 일괄 설계 용역이 9월 말까지 착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2019년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 현황 및 추진경과]

(단위: 선석)

사업 시작연도	항만	부두	접안능력 (DWT)	설계기간	공사기간
2018	부산신항 (4선석)	신항 3부두	50,000	'18.08.~'19.01.	'19.04.~'19.12.
			50,000		
		신항 4부두	50,000		
			50,000		
	인천항 (2선석)	신국제여객부두	30,000	'18.10.~'18.11.	'19.05.~'19.12.
			30,000		
광양항 (2선석)	컨부두(3-1)	50,000	'18.04.~'18.11.	'19.02.~'19.10.	
	자동차부두(3-2)	50,000			
2019	부산북항 (4선석)	감만부두	50,000	'19.08.~'19.12.	'20.01.~'20.12.
			50,000		
		신선대부두	50,000		
			50,000		
	인천항 (2선석)	신국제여객부두	30,000	'19.09.~'19.10.	'20.01.~'20.12.
			30,000		
	광양항 (1선석)	컨부두(2-2)	50,000	'19.07.~'19.10.	'20.01.~'20.12.
국가관리 항만 9개소 ¹⁾ (각 1선석)		-	'19.10.~'19.12	'20.01.~'20.12.	

주: 1. 2019년 10월 이후 설계 및 공사기간은 계획사항임

1)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울산항, 동해·목호항, 포항항

자료: 해양수산부

둘째,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용이 필요한 대형 선박의 입·출항 현황 등 항만별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에서 구축 중인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주로 대형 선박에서 사용하는 설비로서, 실제 선박이 항만 AMP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에도 케이블, 수전반 등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2019년 9월 말 현재 국적선사의 원양 컨테이너 선박 70척 중 고압 AMP 사용이 가능한 선박은 35척으로, AMP 사용이 의무화된 외국 항만³⁾에 기항하는 일부 선박 등에 AMP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선박 종류·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형 선박의 고압 AMP 설비 구축비용은 6~10억원 이상⁴⁾에 이른다는 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항만공사가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선사는 사용요금만 부담⁵⁾할 예정이나 이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요금 감면 협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고압 AMP 설비를 갖춘 선박 수의 유의미한 증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만별 고압 AMP 구축 계획]

(단위: 선척)

항만		2018년	2019년	2020년
항만공사관리 항만	부산항	4	4	2
	인천항	2	2	4
	광양항	2	1	1
국가관리 항만	평택·당진항	0	1	1
	대산항	0	1	1
	군산항	0	1	1
	목포항	0	1	1
	여수항	0	1	1
	마산항	0	1	1
	울산항	0	1	1
	포항항	0	1	1
	동해·묵호항	0	1	1
	제주항	0	0	0
합 계		8	16	16

자료: 해양수산부

- 3) 국내 항만에서 AMP 사용 의무화 여부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AMP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2019.9~2020.8)”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 4) 현대상선(주)의 8,600TEU 컨테이너 선박의 AMP 설비 구축비는 US\$ 1,014,961로 나타났다.
- 5)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선사, 운영사가 2019년 6월 합동으로 체결한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20년 예산안에는 항만공사 관리 항만 외에 9개 국가관리 항만에 2019년 추정사업으로 구축 중인 1선석에 추가로 1선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각 항만의 고압 AMP 설비를 갖춘 대형 선박의 입·출항 현황 등 수요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압 AMP 설비가 설치된 대형 선박의 주요 기항지는 부산항 등 일부 항만에 집중되어 있어, 대형 선박의 입·출항 수가 적은 항만의 경우 고압 AMP 설비의 이용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

[고압 AMP 구축 대상 항만 현황]

(단위: 개, 회, ton)

항만		전체 선석	국가소유 선석	입항횟수	연료소비량
항만공사관리 항만	부산항	217	210	41,910	314,194
	인천항	133	98	13,970	94,957
	광양항	113	85	22,421	183,959
국가관리 항만	평택·당진항	68	32	8,952	69,614
	대산항	41	9	6,657	55,223
	군산항	43	36	3,069	22,930
	목포항	64	57	7,753	26,538
	여수항	19	19	6,752	24,980
	마산항	30	30	5,026	16,183
	울산항	118	67	21,133	139,655
	포항항	58	58	5,761	50,634
	동해·묵호항	26	25	3,733	23,994
	제주항	31	31	5,829	13,155

자료: 해양수산부

실제 고압 AMP 구축 대상인 항만별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 입항횟수와 정박 중인 선박의 연료소비량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일부 항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항만별 고압 AMP 설비 구축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MP 설비 이용 수요, 입·출항 선박의 종류·규모·연료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적정 사업물량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¹⁾은 지자체의 양식기술·기반 구축 및 민간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적조피해를 예방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양식시설 구축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400만원이 감액된 8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친환경양식어업육성	30,143	40,414	42,614	38,990	△3,624	△8.5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13,213	9,924	9,924	8,700	△1,224	△12.3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양식 기술별·품목별 보급률 목표 설정에 기반하여 기술도입 초기단계로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하므로 보급목표 설정 이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양식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국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하여 기술도입 초기단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 보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식 기술별·품목별 보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이후에는 동 사업의 추진방식을 융자사업으로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01

전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20년 예산안에는 세부목표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8개소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87억원이 편성되었다.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는 기술도입 초기단계로 리스크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보급단계로 용자 방식의 지원이 적합한 경우를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20년 사업 추진에 앞서 민간 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목표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²⁾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17~2019년도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새우·넙치 등 일부 품종의 경우 유사한 기술·양식방법에 대한 지원 실적이 다수 존재한다. 첨단기술의 도입 초기단계를 지원하여 민간 확산을 위한 기술검증·데이터수집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입대체·수출증대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고려하되 가능한 다양한 기술·품종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추가적 지원 필요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기술별 지원목표량(안)]

품목	어업권 현황	생산규모	양식기술	지원계획(건)		
				목표 (A)	실적 (B)	계획 (A-B)
새우	587건 (종자6)	5,492톤 (957억원)	육상수조식 바이오플라	15	12	3
			육상수조식 순환여과	8	4	4
			육상축제식 바이오플라	9	8	1
			육상축제식 오염차단필름	6	2	4
			종자생산	3	2	1
			소 계	41	28	13
넙치	645건 (종자123)	37,269톤 (4,957억원)	육상수조식 바이오플라	8	1	7
			육상수조식 순환여과	10	4	6
			육상수조식 전기분해	15	4	11
			육상수조식 오존처리	15	4	11
			스마트 사료공급시설	12	0	12
			종자생산	4	2	2
			소 계	64	15	49

주: 1. 2019년 10월초 기준 계획수립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일부 품목만을 발췌하였다.

2. 생산규모는 양식수산물 기준이다.

자료: 해양수산부

- 2)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표를 수립 중인 것으로 밝혔다.

가. 현 황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¹⁾은 해양사고에 기인한 선박 및 표류물 등의 처리의 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가 이를 직접 수거·처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0	0	0	1,200	1,200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타 세부사업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편성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은 여객선·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지도·점검, 항만·연안수로의 선박 통항안전성 평가, 해양안전체험관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세부사업인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과 사업목적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할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도, 각각 해양사고 예방 관련 사업, 재난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대응·복구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는 등 사업목적과 수행내용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며, ‘항행장애물 수거·처리 사업’ 등 신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6332-307

[2020년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13,811	14,853	14,853	14,740	△113	△0.8

자료: 해양수산부

둘째, 항행장애물 제거를 위한 예산 확보 외에도 행정대집행 개시 절차 단축 등 항행장애물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사고에 기인한 선박 및 표류물 등 항행장애물의 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행자에게 있으나, 의무 불이행시 정부가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항행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²⁾

그런데 「해사안전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항행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항행장애물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외에도 조기에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사안전법」

제25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행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7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 지원 사업의 타 부처와의 차별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23
2	해양환경공단 조사가능기간에 맞춘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 사업의 인건비 집행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27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 증가 방안 마련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30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홍보 사업 차별화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33
5	국립해양박물관의 기관운영출연금을 활용한 사업출연금 성격 집행 방지 필요 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36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46
7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의 사업 성격에 따른 비목 편성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50
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에 대한 결산시 국회 보고 방안 강구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54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설보수비 예산의 경상경비에 편성 필요 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58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상운영비 성격으로 사용한 사업비 예산의 이관조정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65
1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비 개량 이차보전금의 실제 대출 발생 시기를 감안한 집행관리 철저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69



농촌진흥청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2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8억원(35.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2,541	18,995	18,995	12,232	△6,763	△35.6
- 일반회계	8,543	9,451	9,451	9,495	44	0.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6	1,718	1,718	1,718	0	0.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039	6,626	6,626	0	△6,626	순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03	1,200	1,200	1,019	△181	△15.1
합 계	22,541	18,995	18,995	12,232	△6,763	△35.6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19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62억원(8.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80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37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60,346	940,458	943,230	1,019,409	76,179	8.1
- 일반회계	820,477	801,324	804,096	880,286	76,190	9.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432	33,078	33,078	35,427	2,349	7.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9,437	106,056	106,056	103,696	△2,360	△2.2
합 계	960,346	940,458	943,230	1,019,409	76,179	8.1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2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8억원(35.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원이다.

[2020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543	9,451	9,451	9,495	44	0.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6	1,718	1,718	1,718	0	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039	6,626	6,626	0	△6,626	순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03	1,200	1,200	1,019	△181	△15.1
합 계	22,541	18,995	18,995	12,232	△6,763	△35.6

주: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194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62억 원(8.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80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54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37억 원이다.

[2020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20,477	801,324	804,096	880,286	76,190	9.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432	33,078	33,078	35,427	2,349	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9,437	106,056	106,056	103,696	△2,360	△2.2
합 계	960,346	940,458	943,230	1,019,409	76,179	8.1

주: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020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2020년 예산안은 R&D분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육종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9개 사업에 5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등 3개 사업이 종료되었다. 기술보급분야는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및 농업과학기술교육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직형스마트팜 모델구축 확산 및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한 반면, 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방이양으로 인해 축소 편성하였다.

2020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타부처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의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은 시행계획 등을 정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촌자원발굴건수인 반면, 농촌자원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장비를 구축해주는 사업인데 반해, 성과지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설치된 기반시설 및 장비 관련 방문자의 증가율이므로 사용빈도나 활용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농촌진흥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및 과수화상병 등 현안 문제병해충 피해경감기술 개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 551억원 규모이다. 농촌진흥청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밖에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 농촌진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교육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1개)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3,500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	9,001
	과수화상병 등 현안 문제병해충 피해경감기술 개발	4,800
	미생물활용 농업환경문제 개선기술 개발	5,300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기술 개발	5,143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2,000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	720
	북부 원예출장소 구축	271
	고위험 식물 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BL3) 구축	1,028
	농업과학기술교육	2,778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600
합 계		55,141

자료: 농촌진흥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수요자맞춤형 육종자원 대량 신속발굴 기술개발, 농자재관리 및 평가,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 기술개발 등이 있다.

① 수요자맞춤형 육종자원 대량 신속발굴 기술개발 사업은 종자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종개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은 소면적작물 직권등록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팜 해외실증을 위한 사막형 스마트팜 패키지 기술개발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④ 빅데이터 활용모델의 작목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 개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⑤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의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반영되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10개)	수요자맞춤형육종자원대 량신속발굴기술개발	4,000	4,000	9,600	5,600	140.0
	농자재관리 및 평가	14,911	14,911	22,542	7,631	51.2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 마트팜기술개발	9,200	9,200	16,817	7,617	82.8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농림위성)	3,500	3,500	7,995	4,495	128.4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3,031	3,031	10,716	7,685	253.5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 성향상모델개발	2,038	2,038	3,091	1,053	51.7
	농업기술정보화	6,068	6,068	8,909	2,841	46.8
	농업과학기반연구정보화	1,603	1,603	2,188	585	36.5
	작물연구정보화	769	769	1,032	263	34.2
	농업과학관운영	348	348	498	150	43.1
	청사확보및시설개선	2,789	2,789	3,823	1,034	37.1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개)	농축산미세먼지발생실태 및저감기술개발	4,312	4,312	7,612	3,300	76.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농촌진흥청

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민간의 참여 확보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¹⁾은 첨단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규모의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7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0	0	0	7,275	7,275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첫째,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타부처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의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농촌진흥청은 축적된 식물공장 관련 R&D 성과와 LED 등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용 식물공장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72억 7,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320-07)로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을 통해 2020년 대·중·소규모의 수직형스마트팜을 8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131-306의 내역사업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

구분	내용
사업목표	첨단농업기술(재배기술, IoT 기술 등)을 적용한 다양한 규모의 수직형 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을 통한 미래 농업기술 마련
사업내용	복합환경제어,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수직형스마트팜 구축 설비 지원
총사업비	7,275백만원(사업비 7,164, 운영비 111)
사업시행방법	민간자본보조(국비 70%, 자부담 30%),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기간	'20. 1. 1. ~ '20. 12. 31.
사업규모	8개소(대규모 3, 중규모3, 소규모 2) - 개소당 면적 : 대규모(3,150㎡), 중규모(660㎡), 소규모(100㎡) ① (대규모)0.88백만원/㎡×3,150㎡×3개소×70%=5,821백만원 ② (중규모)0.88백만원/㎡×660㎡×3개소×70%=1,220백만원 ③ (소규모)0.88백만원/㎡×100㎡×2개소×70%=123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수직형농장은 초기투자비용 및 운용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개발이 어려워 실용화율이 낮은 특성²⁾이 있기 때문에 수직형농장의 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2015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식물공장산업 생태계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직형농장 관련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17년 수직형농장에서의 작물재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를 지원하였으나, 여러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저조한 사례가 있다.

2)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식물공장 중장기 정책 수립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 2016.8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직형농장 관련 사업 비교]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 식물공장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사업목표	식물공장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의 발굴 및 실증 추진
사업내용	식물공장 관련 네트워킹 구축, 식물 공장 보급을 통한 창업 및 확산, 기 반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인력양성	수직형 농장 시범조성
시행주체	(재)경북테크노파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총사업비	총 82.82억 (국비 42.75억, 지방비 30억, 민간 10.07억)	57.2억원 (국비17.2, 지방비17.2, 민간 22.8)
사업기간	2012~2015	2017~2018
사업규모	23개소	8개소(2017년 3개소, 2018년 5개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북테크노파크

따라서 농촌진흥청의 신규 사업이 타 부처의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성과가 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선례를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사업을 토대로 재배 작물의 종류와 재배기술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기 추진한 재정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부처 사업의 실적 저조의 요인을 분석하고,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의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해당 사업이 2019년 10월 현재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유희자원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지원³⁾ 사업은 페터널, 지하공간 등을 활용한 고소득 및 도시형 식물농장 실용화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농업기술실

3) 코드: 일반회계 1136-300의 내역사업

용화재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은 유희자원 활용한 도시형 식물농장을 4,500㎡의 규모로 1㎡ 당 평균단가 88만원을 적용하여 구축할 계획이며, 필요한 정부 지원금⁴⁾ 27억 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유희자원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지원 사업에서의 식물농장이란, 통제된 시설 내에서 생물의 생육환경(빛, 공기, 열, 양분)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 형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이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⁵⁾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유희자원을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국비지원율은 70%이다.

5)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은 도심지역, 도시인접지역 농촌 등에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희 자원을 활용한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가. 현 황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¹⁾은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농경관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지원 및 소득화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0	0	0	600	600	순증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0	0	0	500	500	순증
사업운영 및 평가	0	0	0	100	100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첫째,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은 법적근거와 시행계획 등을 정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농촌진흥청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은 농촌마을을 선정하여 체험프로그램개발비, 환경정비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마을이 농경문화자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계획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0년에는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년차 사업비 1억원(국비 50%)을 5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131-309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 산출내역]

○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1년차) : (2019) - → (2020) 500백만원(순증)
○ 200백만원 × 5개소 × 50%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의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농업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²⁾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 전통자원 등 발굴하고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 및 특산물 전시장 등을 구축을 통한 농촌의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도 농촌진흥청의 신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촌자원 정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계소득의 창출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의 신규 사업인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주요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세부항목
계획 수립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자원조사, 전통자료 수집, 영향평가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 구입비
환경 개선	자원보호	자원 D/B 구축, 쓰레기 청소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농업유산전시관 등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가치 제고	교육홍보	주민협의체 구축,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교육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장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유산자원 발굴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라 추진한 신규 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은 국가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31-411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특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의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은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농경문화소득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두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도 농촌진흥청의 신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통자원을 복원 및 정비하여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연계소득 창출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내용과 방법도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두 사업 모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³⁾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에서 근거 법령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에서 신규 지원한 2개소는 모두 국가중요농업유산 미지정 지역이었고, 2017년 지원한 2개소 중에는 1개소가 미지정 지역이었다는 점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농촌진흥청의 신규 사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경문화자원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과 차별성을 인정하더라도,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의 내용이 지역민의 참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사업계획이 농경문화자원의 발굴과 정합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연간 1~2회 개최되는 이와 같은 행사가 농경문화 발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1년차 사업의 내용이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경문화 발굴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라는 사업목표로 이어질 개연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업자원의 발굴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사업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

5) 2017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 시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			예산
2020년 (1년차)	사업자 선정	마을선정 : 선정공고(1월)-심사(2월)-선정완료(3월)	
	자원발굴	마을의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4~6월)	40,000
	및 가치교육	마을민 교육(5~7월)	5,000
	발굴자원 활용 및 체험상품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화(6~7월)	20,000
		- 마당극, 인형극(전통놀이, 구전자원, 세시풍속 활용)	
		체험 프로그램 실행 교육(7~8월)	15,000
		- 마당극 등 공연연습, 전통놀이 전수	
		체험 기반 조성(체험 및 교육장) 9~11월	50,000
	자원관리	농경문화자원 보수 및 환경정비(9~12월)	70,000
자체평가	1년차 사업평가 및 2년차 사업계획 수립(12월)	-	
소계			200,000
2021년 (2년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1~3월)	5,000
		- 서비스, 모객, 홍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3~5월)	
		- 체험 교재·교구·도구개발, 시범운영	30,000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체험 기반 조성 및 환경정비(3~7월)	
		- 체험 기자재 및 설비	100,000
		- 농경문화자원 활용 체험환경 조성(안내판, 접근환경)	
	전시·판매환경	농경문화 전시 및 판매환경 조성(5~8월)	60,000
자체평가	사업운영 및 성과평가, 피드백(9~11월)	5,000	
	* 경제적 효과, 운영방법, 참여자 만족		
소계			200,000

자료: 농촌진흥청

게다가 농촌진흥청의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재정의 지원대상은 일반적인 농촌자원이 아닌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이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아닌 농경문화자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의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간의 적절성이 저조하다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촌자원발굴건수인 반면, 농촌자원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경관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지원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소득화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촌자원발굴건수’이다.

그러나 농촌자원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발굴건수로 측정하여야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농촌자원을 통해 농촌경관보전, 지역공동체유지, 소득화모델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자원발굴건수’라는 성과지표만으로는 농촌경관보전, 지역공동체유지, 소득화모델구축 등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성과지표를 정비하여 농촌자원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 성과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농촌자원 발굴건수	목표	-	-	-	-	3.1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 조사보고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 황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¹⁾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설전시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농업과학관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과학관 운영	348	348	348	498	150	43.1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와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목명세서 등을 정비하여 관련 예산안을 구분함으로써 편성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관²⁾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4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특별전시, 전시물 개선, 농업기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비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7111-202

2) 농업과학관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도 농업과학관 운영 예산안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19.6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210-01)	135	24	24	136	136	66	11	136
시설장비유지(210-09)	48	145	145	57	57	200	0	257
일반용역비(210-14)	130	143	143	130	130	57	36	80
국내여비(220-01)	10	10	10	4	4	4	2	4
국외업무여비(220-02)	6	6	6	6	6	6	0	6
손실보상금(310-01)	5	5	5	0	0	0	0	0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15	15	15	15	15
합계	348	348	348	348	348	348	64	498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을 통해 농업과학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정책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³⁾의 각목명세서에도 농업과학관 운영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즉, 연구정책국의 기본경비는 연구정책국의 운영을 위한 비용인데, 해당 사업 예산에는 농업과학관의 시설유지 및 운영, 인건비 등과 관련하여 1억 6,160만원이 편성된 것이다.

3) 코드: 일반회계 7111-252

[연구정책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중 농업과학관운영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0 예산안	내용
인건비(110-13)	48,232	행정실무원(농업과학관)
일반수용비(210-01)	51,706	농경유물보전처리, 과학관방문기념 사진제작, 기획 전시회 운영, 전시관 운영자료 수집, 홍보인쇄물 제작, 자연학습관 식재비, 과학관 협회비, 특별전시회 전시합판 디자인, 과학문화확산 기획전시회 등
피복비(210-03)	1,800	농업과학관 안내 유니폼
유류비(210-08)	28,627	농업과학관 운영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8,821	농업과학관 승강기/영상장비/전시조형물/냉난방 설비 유지보수비 등
재료비(210-11)	3,333	투시용 영상장비 등
고용부담금(320-09)	9,090	농업과학관(무기계약직) 고용부담금
합계	161,609	

자료: 1. 농촌진흥청

2. 농촌진흥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019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실제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은 전시콘텐츠 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과학관의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한 반면, 연구정책국의 기본경비는 농업과학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편성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두 사업을 구분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 및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두 사업 모두에서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나 설치비용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내용의 예산이 서로 다른 사업에서 구분되지 않고 편성될 경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및 평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하는 바,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에서 필요한 예산과 연구정책국의 기본경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연구정책국 기본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 편성 및 실집행 내역]
(단위: 천원)

각목명세서 편성 내역		실집행 내역	
항목	금액	건명	금액
- 장애자용 승강기 유지보수비	4,800	- 농업과학관 강화유리문 등 수리	693
-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4,000	- 농업과학관 4D영상관 프로젝트 램프 교체	6,085
- 전시조형물 유지보수비	4,500	- 농업과학관 대형현수막 게시대 설치	1,100
- 냉난방설비 수리 및 유지관리	2,400	- 농업과학관 과수전시포장 지주대 설치 외 1건	3,179
- 공기정화기 수리 및 유지관리	1,200	- 농자재시료창고 급배기 팬 전기 공사	286
- 소방설비 유지관리	1,200	- 농자재시료창고 급배기 팬 설치	2,079
- 종합제어콘트롤 및 시스템 유지관리	1,000	- 농업과학관 전시포장 관수설비공사 등	5,423
합계	18,860	합계	18,845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비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 편성 및 실집행 내역]
(단위: 천원)

각목명세서 편성 내역		실집행 내역	
항목	금액	건명	금액
-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물 유지관리	47,800	- 과수전시포 올타리 설치 외 1건	5,500
		- 농업과학관 수장고 훈증소독	16,947
		- 농업과학관 전시물 LED램프 교체	2,535
		- 영상송출용 릴레이 교체	1,067
		- 농업과학관 전시물 H/W 이전	2,860
		- 농업과학관 특별전시 조명 설치	2,420
		- 신기술전시관 설치 전기공사	9,735
		- 신기술전시관 전시영상 설치	19,569
		- 농업과학관 신기술전시관 설치	79,144
		- 농업과학관 어린이체험시설 보수	1,947
		- 기타 콘텐츠 유지 보수	2,869
합계	47,800	합계	144,593

주: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비의 일반수용비 9,7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비목 변경하여 집행함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 황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¹⁾, 세종계정²⁾, 제주계정³⁾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 8,000만원 감액된 77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지역자율)	57,620	75,076	75,076	74,681	△395	△0.5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세종)	450	0	0	300	300	순증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제주)	4,037	4,175	4,175	2,600	△1,575	△37.7
합계	62,107	79,251	79,251	77,581	△1,980	△2.5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첫째, 내역사업인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의 2020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의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을 위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시설 및 기술보급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3-300
- 2)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7-300
- 3)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5-300

동 사업은 2019년까지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농업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 청소년바른식생활실천지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국내육성우수품종보급(자율계정),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제주계정)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농기계교육, 경영교육, 영농교육과 함께 장비 및 시설을 보급하는 내용의 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들 내역사업이 2020년 일괄 지방이양 된 결과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에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 예산안에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유일한 내역사업이 되었으며, 동 내역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6.2%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내역사업명	2018		2019	2020	B-A	(B-A)/A
		예산	결산	예산액(A)	예산안(B)		
지역자율	농촌지도기반조성	32,082	32,082	42,025	74,681	32,656	77.7
세종	농촌지도기반조성	450	450	0	300	300	순증
제주	농촌지도기반조성	1,812	1,812	2,000	2,600	600	30.0
합계		34,344	34,344	44,025	77,581	33,556	76.2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순회차량 및 상담차량, 농기계수리 차량, 다목적방제기(차량 포함), 교육장비, 농산물가공장비, 종합검정장비, 가축질병장비, 조직배양장비, 미생물배양장비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동 내역사업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2019년 1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촌지도기관의 장비 및 시설소요 및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76.2% 증액 편성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장비를 구축해주는 사업인데 반해, 성과지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설치된 기반시설 및 장비 관련 방문자의 증가율이므로 사용빈도나 활용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까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참여방문자 증가율’과 ‘사업참여농가 소득증가율’이었으나, 내역사업인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성과지표였던 ‘사업참여농가 소득증가율’도 제외되었다.

그 결과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반해, 성과지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설치된 기반시설 및 장비 관련 방문자의 증가율이므로 이러한 지표로는 실제 농민의 사용빈도나 활용률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측정산식
지역 자율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목표	23.0	25.7	27.9	30.2	31.7	$\Sigma [(사업추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 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 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times 100$
		실적	23.4	26.6	28.8	30.2	-	
		달성도	101.7	103.5	103.2	100.0	-	
	사업참여 농가소득 증가율(%)	목표	25.3	26.7	27.1	28.5	-	$(사업당해 년도 소득 - 사업전년도 소득) / 사업전년도 소득 \times 100$
		실적	26.4	26.6	28.3	28.5	-	
		달성도	104.3	99.6	104.4	100.0	-	
세종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목표	21.5	23.4	-	-	-	$\Sigma [(사업추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 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 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times 100$
		실적	22.4	27.3	-	-	-	
		달성도	104.0	116.6	-	-	-	
제주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목표	41.1	43.4	47.3	51.6	54.1	$\Sigma [(사업추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 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 전년도 사업참여 방문자수] \times 100$
		실적	41.2	43.8	47.5	51.6	-	
		달성도	100.2	100.9	100.4	100.0	-	
	사업참여 농가소득 증가율(%)	목표	32.8	31.5	31.8	38.7	-	$(사업당해 년도 소득 - 사업전년도 소득) / 사업전년도 소득 \times 100$
		실적	29.7	31.5	49.5	38.7	-	
		달성도	90.5	100.0	155.7	100.0	-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 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¹⁾은 농업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역사업인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은 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할 종자·종묘 등에 관한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3,100만원 증액된 12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26,920	34,417	37,189	34,381	△2,808	△7.6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5,677	10,765	10,765	12,896	2,131	19.8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 2020년에는 필요한 총지출 815억 2,200만원 중 자체수입 471억 4,100만원을 차감한 343억 8,100만원을 수지차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은 종자 생산물량의 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통해 계획한 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증가된 물량과 관련하여 판매 등 보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2020년 지출계획으로 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농생명ICT검인증센터 설치, ②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③ 해외테스트베드 구축, ④ 기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36-300

술 실용화 촉진, ⑤ 분석검정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을 보면, 농업실용화재단은 2019년 2,424톤의 종자를 생산하였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3,024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107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종자생산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5,677	10,765	10,765	12,896	2,131	19.8
종자	5,102 (1,436톤 ×3,554천원)	8,616 (2,424톤 ×3,554천원)	8,616 (2,424톤 ×3,554천원)	10,747 (3,024톤 ×3,554천원)	2,131	24.7
종묘	575 (933천주 ×1,500원)	1,399 (933천주 ×1,500원)	1,399 (933천주 ×1,500원)	1,399 (933천주 ×1,500원)	0	0.0
약용작물	-	750 (375천주 ×2,000원)	750 (375천주 ×2,000원)	750 (375천주 ×2,000원)	0	0.0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2018년산 종자에 대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보급현황을 보면, 2,215톤의 구매요청이 있었고, 이 중 1,583톤을 실제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290~2.161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941~1,583톤을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2020년 종자생산 물량은 3,024톤인데, 이는 2018년산 종자 신청량(2,215톤) 대비 809톤 많은 양이다. 따라서 감모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3,024톤의 생산계획은 전년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증가한 물량과 관련하여 판매 등 보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산 종자 보급현황]

(단위: 톤)

구분 (시기)	맥류 (’18.8.~)	특수미 (’18.11.~)	발작물 (’19.2.~)	계
생산량	435.5	1,491.1	234.4	2,161.0
신청량	553.5	1,455.5	205.8	2,214.8
보급량	414.1	1,006.9	161.8	1,582.8

주: 시기란 종자 신청 시기를 의미(2018년산 종자의 경우 맥류는 7~8월에 신청하고, 특수미는 11월부터, 발작물은 이듬해 2월부터 신청받음) 한다.

자료: 농촌진흥청

[연도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 보급실적]

(단위: 톤, %)

구분	2014년산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생산량	1,289.8	1,456.9	1,521.5	1,879.9	2,161.0
총 신청량(A)	0	0	1,539.6	1,866.4	2,214.8
총 보급량(B)	940.6	1,251.7	1,249.5	1,662.4	1,582.8
B/A	0.0	0.0	81.2	89.1	71.5

주: 연산의 구분은 종자 신청시기로 구분되는데, 2014년산의 신청 시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고, 2015년산의 신청 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이다. 2016년산~2018년산의 경우도 이와 같다.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종자의 판매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재고가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유효수요는 보급량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총지출 중 자체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수지차로 지원받는 기관이고, 종자 생산 예산(107억원)이 총지출(815억원)의 13.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효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통해 2020년 종자생산량(3,024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0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계획한 유효수요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¹⁾은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고질적 사회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0	0	0	2,000	2,000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는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단 상반기 협약 체결할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 준비를 전제로 12개월의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그러나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임에도 사업 첫째 과제수행을 위해 1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과제 수행 개월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36-314

2)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4., p.33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2020년도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 편성내역]

농업생산환경 개선 리빙랩 : 10억원

- 음식물류폐기물 활용 유기질비료의 안전관리 기술 개발, 퇴비의 안전관리 기술 개발, 비료의 농경지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내역사업으로 1,000백만원

-- 신규 : 8개과제×125백만원×12/12

농촌생활환경 개선 리빙랩 : 10억원

- 사용자 적용 농작업 장비설계 기준 설정 및 적합성 평가, 취약계층 농작업 보조시스템 개발, 취약계층 맞춤형 농작업기 실증을 위한 내역사업으로 1,000백만원

-- 신규 : 7개과제×143백만원×12/12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은 사전기획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말부터 단기간 공모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과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연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분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다년도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의 규모가 확정된 후 편성된 재원을 토대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규모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1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국민의 참여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의 도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산·학·민·관이 공동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과제 공모·선정·연구단 구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3년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및 준비가 제대로 완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시형 스마트팜 실증 사업의 성과 활용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Ⅲ」 pp.98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비에서 경상경비 성격의 사업인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조정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Ⅲ」 pp.102



산림청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46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0억원(△7.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0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3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산림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0,817	89,400	89,400	77,466	△11,934	△1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34,276	265,986	265,986	250,470	△15,516	△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2	0	0	0	0	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571	17,900	17,900	18,320	420	2.3
합 계	333,666	373,286	373,286	346,256	△27,030	△7.2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2,11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4억원($\Delta 0.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6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4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9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6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48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산림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71,028	1,023,722	1,080,486	1,086,228	5,742	0.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57,753	626,859	648,060	644,493	$\Delta 3,567$	$\Delta 0.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	40,188	55,188	188,982	133,794	24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5,734	362,123	368,868	216,845	$\Delta 152,023$	$\Delta 4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4,419	71,114	71,114	74,783	3,669	5.2
합 계	2,028,934	2,124,006	2,223,716	2,211,331	$\Delta 12,385$	$\Delta 0.6$

자료: 산림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9,61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3억원($\triangle 1.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08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61억원이다.

[2020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0,817	89,400	89,400	77,466	$\triangle 11,934$	$\triangle 1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3,607	781,375	809,321	808,153	$\triangle 1,168$	$\triangle 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2	0	0	0	0	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1,033	72,295	72,295	76,078	3,783	5.2
합 계	1,046,459	943,070	971,016	961,697	$\triangle 9,319$	$\triangle 1.0$

주: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9,70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49억원(2.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80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08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9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6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61억원이다.

[2020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83,622	1,512,070	1,590,035	1,680,549	90,514	5.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2,242	781,375	809,321	808,153	△1,168	△0.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	40,188	55,188	188,982	133,794	24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5,734	362,123	368,868	216,845	△152,023	△4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529	72,295	72,295	76,078	3,783	5.2
합 계	2,797,127	2,768,051	2,895,707	2,970,607	74,900	2.6

주: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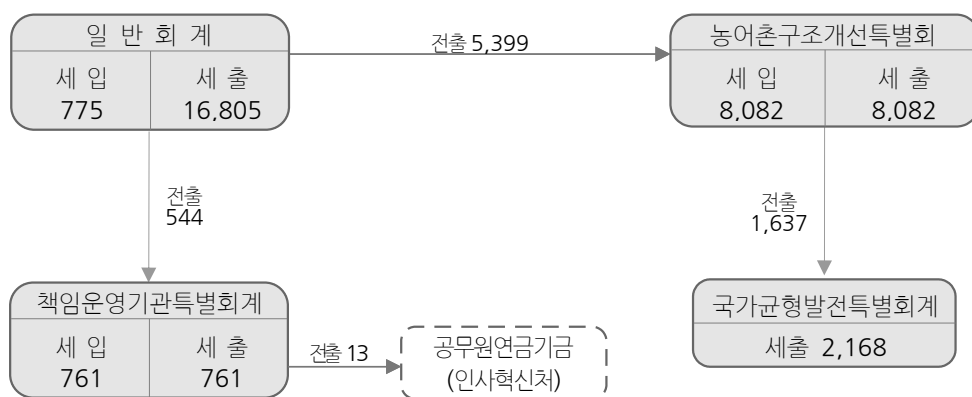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

다.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산림청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39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544억원이 전출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637억원이 전출되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3억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산림청

2020년도 산림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재정투자 내실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방사업 예산 181억원,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50억원을 감액하는 등 513억원이 감액되었고, ②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경영자원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2,071억원이 지방 이양되어 감액되었으며, ③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연차 사업비 반영 등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2019년 1,300억원 → 2020년 2,048억원), ④ 세계산림총회 개최 및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등 국제산림협력 및 R&D분야 예산이 증액되었다(2019년 1,235억원 → 2020년 1,381억원).

분야별로는 산림자원육성관리를 위하여 5,899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 2,193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분야 2,491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분야 2,048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분야 5,874억원, 국제·남북협력 및 R&D분야 1,381억원을 편성하고,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분야에 2,22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은 사업성과와 효과적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의 경우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제안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유형별로 중·장기적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이 요구된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산림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151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의 세계산림총회 개최 사업은 산림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세계산림총회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2021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R&D)사업은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대량 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가공기술 고도화 및 신소재 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R&D)사업은 산림산업체·임업인 중심의 유망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를 위하여 후속 R&D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세계산림총회 개최	5,000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2개)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R&D)	4,894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R&D)	5,180
합 계		15,074

자료: 산림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산불방지대책,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정원 조성관리,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등이 있다.

①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특수진화대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 개원에 따른 수목원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사업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 정책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정원 실습·보육공간 조성 및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은 도시 바람길 숲 연차 사업비 반영 등으로 증액되었다.

[산림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산불방지대책	16,993	25,000	45,752	20,752	83.0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21,523	21,523	41,111	19,588	91.0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개)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50,000	50,000	70,000	20,000	40.0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개)	정원 조성관리	7,265	7,265	15,805	8,540	117.5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40,188	55,188	188,982	133,794	242.4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산림청

II

주요 현안 분석

1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등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¹⁾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도시숲 조성, 조림, 공익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 중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2020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이며,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각각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으로부터 이관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37억 9,400만원 증액된 1,88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40,188	55,188	188,982	133,794	242.4
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	1,620	1,620	1,620	0	0.0
국가미세먼지저감 산림자원 조사	1,368	1,368	1,368	0	0.0
미세먼지 저감 산림자원분석 시스템 구축	100	100	2,897	2,797	2797.0
미세먼지 저감숲 운영	300	300	300	0	0.0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300	300	300	0	0.0
도시바람길숲 조성	5,500	5,500	58,000	52,500	954.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0,000	45,000	45,000	0	0.0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1,000	1,000	5,000	4,000	400.0
미세먼지 저감 조림 ¹⁾	(35,750)	(35,750)	25,025	△10,725	△30.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¹⁾	(70,674)	(35,750)	49,472	13,722	38.4

주: 1)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의 2019년 예산은 각각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에 편성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자료: 산림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10-300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주요 내역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예산안	사업내용
도시바람길숲 조성	58,000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녹지축 조성 (17개 도시, 도시당 국비 50%, 최대 100억원 지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5,000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생활권으로 유입 억제 (총 90ha, 개소당 0.4~5ha 규모, 국비 50%)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5,000	국유지와 공공시설에 실외·옥상·실내정원 조성 (개소당 5~10억원, 국비 50~100%)
미세먼지 저감 조림	25,025	도시 근교, 산업단지 주변 녹지 등을 중심으로 혼효림 조성 (국유림 국비 100%, 공·사유림 국비 5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49,472	생활권 주변 산림의 간벌·가지치기 등 관리 (국유림 국비 100%, 공·사유림 국비 5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생활권으로의 유입을 감소시키려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차단숲 90ha 조성을 위하여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한 450억원이 편성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업대상 도시에 적합한 형태의 바람길숲을 설계·조성하는 사업이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행되며, 보조율은 50%로 도시 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2019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11개 도시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0년 예산안에는 11개 도시의 2년차 사업비 550억원과 추가 6개 도시에 대한 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었다.

나. 분석의견

해당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등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사이에 일정규모의 완충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로 90ha 조성계획에 이어 2020년에도 90ha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시화산업단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한 결과 인근 주거단지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12%, 초미세먼지 농도는 17% 저감되었다는 측정결과²⁾를 근거로 사업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단숲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사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의 개소당 평균면적은 약 2ha 수준으로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24ha) 사례의 8.3%에 불과하다. 2019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 32개소 중 15개소의 사업면적이 2.0ha 미만이고, 인천 산업단지(0.5ha), 주안 산업단지(0.4ha)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효과 달성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2020년의 경우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사업대상지(안)³⁾의 개소당 면적은 평균 1.8ha로 0.2~0.5ha 규모로 추진하는 곳도 6개소에 이른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차단숲의 너비도 고려해야 하는데, 2019년에 추진 중이거나 2020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대상지의 도면상 확인할 수 있는 부지의 폭이 3~10m 수준으로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폭 175m+25m)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해당 사례와 같은 미세먼지 12~17%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미세먼지 관련 숲 조성 전·후 산림자원 현황과 미세먼지 수치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14억원이 편성⁴⁾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018.3.

3) 2019년 9월 말 기준 46개소, 84ha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안)를 수립한 상태이며, 추가로 6ha를 발굴 중이다.

4)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산림자원 조사’ 사업에서 조림·숲가꾸기 23개소, 바람길숲 4개소, 차단숲 6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수행한다.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사례와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대상지(안) 비교]

사업대상지	면적(ha)	사업대상지 사진
시화산업단지	24.0	
부산 진구 철도경비창	0.5	
안성 제2·3 산업단지	0.2	
강진 쓰레기매립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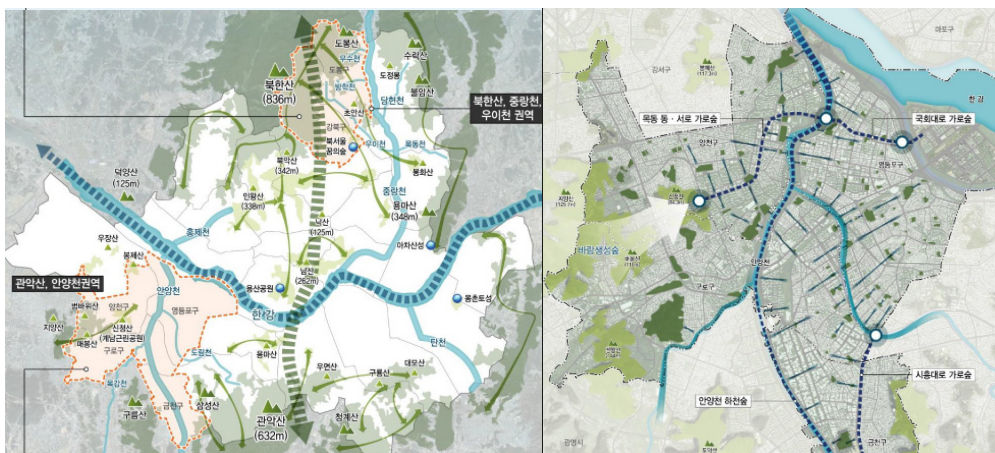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개별 용지를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는 방식을 벗어나 도시 전체의 대기흐름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길숲을 설계·조성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바람길숲 조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9년 8월말 현재 1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며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인근 도심 지역에 비해 도시숲 내의 미세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게 나타났다는 측정 결과⁵⁾ 등을 들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숲 내부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뒷받침하는데 그치며, 숲 인근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시 전체에서 숲의 종류·배치 등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동 사업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숲 조성 사례⁶⁾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와 사업대상지의 지형적·생태적 차이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길숲 조성 사업 추진계획(안) 사례: 서울시]



자료: 산림청,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서울특별시)”

- 5) 산림과학원에서 2017년 홍릉산림과학시험림 내와 인근 도심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이다.
- 6) 자동차 산업도시로 분지지형에 의한 대기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Green-U forest(8km) 조성하였으며, 중앙역 녹화·이기벽·가로수 등 다양한 형태의 선형녹지를 통해 도심과 녹지를 연결한 사례이다.

2019년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 자료 등을 살펴 보면 도시외곽 산림, 하천변 녹지, 도로변 녹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녹지축을 연결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 위치·규모를 만족 시키는 부지 확보 가능성 등 해결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사업 진행 중인 11개 도시와 2020년 사업 추진 예정인 6개 도시에 대하여도 도시의 면적, 기조성 녹지면적,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소당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사업방식 보완 검토 필요

가. 현 황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소규모 녹색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국유지 내 실외·옥상정원 5개소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5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50억원이 반영되었다.⁷⁾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을 제안취지에 맞게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7) 사업내용이 공공시설에 실외·옥상·실외정원 조성, 벽면녹화 등을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동 내역사업은 정원인프라를 조성·활용하는 내용인 정원조성관리 사업 내에 편성함이 사업편성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조성관리 사업 주요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정원조성관리	정원인프라 조성·활용
국가정원 운영관리	국가정원 2개소(순천만, 태화강)의 운영·관리
정원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	정원 관련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배양을 위해 소규모 정원 조성 실습기회 제공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무궁화동산을 조성·관리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국가상징으로서의 위상 제고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범사업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볼 설치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3건의 국민제안에 기반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주요내용]

구분	제안1	제안2	제안3
제안자	박○○	홍○○	남○○
제안내용	옥상정원설치 의무화 및 조경관리자 고용	학교 실내정원 조성	학교 실내정원 조성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흡연자를 위한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 교육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 교육환경개선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외·옥상정원 5개소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제안 2건은 실외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유동인구가 주로 단시간 이용하는 공공기관, 기차·지하철역 등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는 점은 제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단계에 부지확보의 용이성,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유지 또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참여예산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병원·학교 등 실외활동이 제한되고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개요]

구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국유지 내 실외·옥상정원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사업기간	2019년~계속	2020년~계속
사업물량	연 5개소	연 5개소
대상지	국유지 중 학교, 병원이 많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지역	기차, 지하철역, 도서관 등 공공시설
예산단가	개소당 5억원	개소당 10억원
지원비율	국비 100%	국비 50%
조성주체	한국수목원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적정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정원조성관리 사업¹⁾은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정원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 19억원,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범 사업 52억 등이 신규로 반영되어 전년대비 8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정원조성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원조성관리	4,726	7,265	7,265	15,805	8,540	117.5
정원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	0	0	0	1,900	1,900	순증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범사업	0	0	0	5,240	5,240	순증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첫째,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식재에 적합한 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어 사업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동 사업은 정원 관련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위하여 관련 대학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참여작가와 팀을 구성하여 정원 디자인·설계·조성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740-312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2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비용은 재료비, 제작비, 교통비, 교육비, 전문가 매칭 등으로 개소당 7,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 참가팀 공모를 완료하고 이후 참여작가 선정과 팀구성 등을 진행하며 식재는 9~10월 진행할 예정으로, 공모·제안서 평가·팀구성·정원디자인 등 일련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식재에 적합한 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다. 동 사업은 정원 관련 대학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이월 뿐 아니라 참가자의 학업 또는 취업 등 일정에 곤란함을 야기할 수 있어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정원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부지발굴·제공	전년도 9~12월	■ 지자체에서 유휴부지 등 소규모 정원조성 가능 부지 제시 ■ 도시 낙후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우선 선정
참가팀 공모	3~5월	■ 가든서포터즈 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공모 신청
제안서 제출·평가	6월	■ 지자체에서 제공한 부지 중 정원 조성 희망 대상지를 참가팀별로 자율적으로 선정 후 제안서를 작성·제출 ■ 정원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참가팀을 최종 확정
참여작가 선정	7월	■ 정원분야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참여작가를 모집
설명회 개최 및 팀구성	7월	■ 작가, 참가팀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 ■ 참여작가 1명 + 참가팀(5명)이 한 팀을 구성
정원 디자인·설계	7~8월	■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자원(자생식물 등)을 활용, 디자인·설계
정원 조성	9~10월	■ 지역 내 양성된 시민정원사도 참여하여 조성 추진
결과보고	11월	■ 정원분야 전문기관·단체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둘째, 스마트 가든볼 설치 시범사업은 사업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최소 물량만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휴공간(3m×3m 내외)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336대²⁾를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 중 국비 50%를 보조하여 총 5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산림청은 선행 연구과제인 ‘도시생활인을 위한 치유·휴식·관상용 정원(가든볼) 연구·개발’의 임상실험 결과 가든볼 체험 후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등 평가항목이 하락하였다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은 이용빈도·이용자 만족도 등이 임상실험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2020년에는 필요한 최소 물량만 추진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총 391개소(산업단지 348개소, 공공시설 43개소)의 희망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현 황

공공산림가꾸기 사업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해예방 및 산림자원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일자리 유형]

일자리유형	역할
숲가꾸기 패트룰	주택 피해목 제거 등 긴급한 산림민원 해결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GPS측량, 식생 조사 등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자원 재활용

자료: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86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숲가꾸기	208,997	184,108	199,429	200,600	1,171	0.6
공공산림가꾸기	18,267	17,397	32,718	28,608	△4,110	12.6

자료: 산림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4-302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유형별 사업성과 및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고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8~2020년 일자리유형별 예산반영 및 고용계획을 살펴보면, 고용인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산림청은 연도별, 또는 본예산 편성 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필요인력의 차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계획이 엄밀한 사업성과 및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기보다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자리유형별 고용계획]

일자리유형	인원(명)					예산액(백만원)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숲가꾸기 패트롤	135	135	135	1,070	935	3,582	3,582	3,843	9,845	14,696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00	200	200	200	200	2,105	2,105	2,318	2,318	2,381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59	1,159	1,043	2,043	1,043	11,518	11,518	11,236	16,246	11,531
덩굴류 제거단	0	0 ¹⁾	0	1,216	0	0	0 ¹⁾	0	4,309	0

주: 1) 2018년에는 예비비 13.9억원을 배정받아 덩굴류 제거단 450명을 고용하였다.

자료: 산림청

이처럼 고용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고용인원의 예측가능성, 교육 훈련 실시계획 수립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품질 및 인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일자리유형별로 자원수집 실적, 위험목 제거 건수 등이 등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중기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 사업¹⁾)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700억원이 편성되었다.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사업²⁾은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림사업종합자금	54,000	50,000	50,000	70,000	20,000	40.0
산림경영기반조성	42,131	42,400	42,400	62,900	20,500	48.3
사립휴양시설조성	139	1,000	1,000	500	△500	△50.0
산양삼생산	3,230	1,900	1,900	1,900	0	0.0
해외산림자원개발	8,500	4,700	4,700	4,700	0	0.0

자료: 산림청

[2020년도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업인경영자금지원	8,000	9,500	9,500	8,000	△1,500	△15.8

자료: 산림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10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11

나. 분석의견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과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은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예산안에서 산림경영기반 사업 예산은 629억원으로,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대출액은 300~400억원 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다만 2019년에 전문임업인 중 임업후계자와 신지식임업인에 대한 1인당 융자한도가 상향 조정(2억원→3억원)되면서 1건당 대출 신청액이 전년대비 42.6% 가량 상승하였는 바, 2020년 이후에도 융자한도 조정에 따른 신청액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인 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건당 융자액 규모가 증가한 만큼 융자액이 실제 산림사업 자금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내용]

구분	2018년 선발현황(명)	'18년 융자한도	'19년 융자한도
독림가 ¹⁾	832	사업자 당 3억원 이내	사업자 당 3억원 이내
임업후계자 ²⁾	12,915	사업자 당 2억원 이내	
신지식임업인 ³⁾	74		

주: 1) 5ha(유실수의 경우 3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2)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임업종류에 따라 0.1~0.3ha 재배면적 요구)

3)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임업인

자료: 산림청

[전문임업인 선발 현황]

(단위: 명)

독림가					임업 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계
법인	모범	우수	자영	소계			
15	22	76	719	832	12,915	74	13,821

주: 2018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대비 대출 현황]

(단위: 건, 억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신청		대출		신청		대출		신청		대출		신청 (19.7월말)		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산림사업종합자금	651	787	358	406	607	699	455	495	540	675	393	479	584	1,031	500
①산림경영기반	572	626	310	292	553	614	412	439	473	552	326	374	556	925	424
- 숲가꾸기	5	2	1	1	3	1	2	0.2	1	-	-	-	1	-	11
- 임도시설	10	13	1	2	6	5	1	0.8	3	5	-	-	1	1	
- 전문임업인	557	611	308	289	544	609	409	438	469	547	326	374	554	924	
②사립휴양시설	6	27	1	3	4	13	3	2.6	2	1	-	-	3	20	10
③산양삼	50	28	30	16	28	15	21	10	60	37	51	31	22	10	19
④해외자원개발	23	106	17	95	22	56	19	43.5	5	85	16	74	3	74	47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사립휴양시설, 임도시설 등 일부 내역사업에서는 매년 예산액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여 다른 내역으로 조정이 발생하여 각 내역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사업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당초 계획한 해당 분야 산림사업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빈번한 예산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내역사업별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당초	6차 조정 후	증감	당초	6차 조정 후	증감	당초	3차 조정 후	증감
산림사업종합자금	61,464	61,464	0	54,000	54,000	0	50,000	50,000	0
①산림경영기반	32,244	52,371	20,127	34,700	42,131	7,431	42,400	42,481	81
②사립휴양시설	1,920	900	△1,020	1,400	139	△1,261	1,000	950	△50
③산양삼	1,200	1,200	-	1,900	3,230	1,330	1,900	1,869	△30
④해외자원개발	26,100	4,350	△21,750	16,000	8,500	△7,500	4,700	4,700	0

자료: 산림청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 도입된 사업으로, 임업인의 단기경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인당 2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고정금리 기준 2.5%로 융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의 2018년 대출액은 46.6억원, 2019.7월말까지 대출액은 24.7억원에 불구하고에도 2020년도 예산안은 8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산림청은 집행부진 사유로 매월 대출예정액에 대한 자금 배정절차로 인하여 신청에서 대출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는데, 긴급한 상황에 소액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 등 절차 단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2019.7		
	예산	집행	실대출	예산	집행	실대출
임업인경영자금지원	8,000	8,000	4,662	9,500	9,500	2,470

자료: 산림청

※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임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06
2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산물 수출 박람회 사업성과 저조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10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예산상 사전절차인 ISP를 수립하지 않은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14
4	한국수목원관리원의 국립세종수목원 실제 인력, 장비 등의 운영가능기간을 감안한 집행관리 철저 등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I」 pp.118



해양경찰청

1 현 황

해양경찰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49억 3,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800만원(0.8%) 증가하였다.

[2020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839	4,898	4,898	4,936	38	0.8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4,91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86억원(8.6%) 증가하였다.

[2020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60,303	1,373,217	1,373,217	1,491,776	118,559	8.6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해양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0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원거리·악천후에도 운용 가능한 대형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진행중인 대형헬기 도입의 연차소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2019년 31억 5,700만원 → 2020년 244억 3,400만원), ②한·중·일·러 접적해역인 동해 북방어장에 3천톤급 전용 경비함정을 신규 건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2020년 9억원), ③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 대한 복장·보험 제공 및 수색구조 참여 일반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2019년 6억 9,300만원 → 2020년 17억 4,700만원).

2020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전도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후선박에 대한 대체건조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 신규 사업인 유·도선안전관리강화 사업의 지원대상, 용자액의 상환기간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소요 예산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10억원 규모이다.

유도선 안전관리강화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선령에 도달한 유선 또는 도선의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노후 유·도선을 새로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조자금을 이차보전하는 사업이다.

국제협력강화 사업은 기존 세부사업인 ‘국제외사활동’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으로, 국제기구 협력 강화와 해외주재관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유도선 안전관리강화	814
	국제협력강화	203
합 계		1,017

자료: 해양경찰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함정건조, 항공기도입, VTS구축운영,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수색구조역량강화 등이 있다.

①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은 경비함정(3천톤 등 11척, 고속단정 18대) 건조비와 제주권 대형헬기 1대가 신규 반영되었고, 기존 진행 중인 함정 및 항공기 도입의 연차사업비가 증액되었다. ② VTS구축운영 사업은 제주·서귀포 연안VTS 구축비가 신규 반영되었고, 기존 진행중인 군산·목포 연안VTS 구축 등 연차사업비가 증액되었다. ③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목포에 제2정비창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초조사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설계비가 일부 증액되었고, ④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은 전 파출소를 구조형으로 개선하고 현장직원 구조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⑤ 수색구조 및 방제작업 등 장비개발(R&D) 예산이 증액되었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개)	함정건조	121,459	121,459	165,400	43,941	36.2
	항공기도입	21,807	21,807	31,464	9,657	44.3
	VTS구축운영	21,140	21,140	30,331	9,191	43.5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2,818	2,818	8,169	5,351	189.9
	수색구조역량강화	5,065	5,065	8,627	3,562	70.3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 조기술개발(R&D)	1,672	1,672	4,850	3,178	190.1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기 술개발(R&D)	1,100	1,100	3,311	2,211	201.0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선 진화기술개발(R&D)	2,266	2,266	4,091	1,825	80.5
	정보통신보안활동	586	586	946	360	61.4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해양경찰청

II

개별 사업 분석

1

함정건조 사업 및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가. 현 황

함정건조 사업¹⁾은 함정 신규 증강 및 노후함정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건조 중인 함정 19척의 연차소요와 3,000톤급 경비함 1척 증강, 함정 10척 및 고속단정 18대의 노후대체건조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439억 4,100만원이 증액된 1,654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함정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함정건조	128,121	121,459	121,459	165,400	43,941	36.2

자료: 해양경찰청

항공기도입 사업²⁾은 해양재난사고 대응, 해양경비에 필요한 항공기를 신규 또는 대체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노후대체 헬기 1대와 대형헬기 1대의 연차소요와 대형헬기 1대 증강 소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6억 5,700만원이 증액된 3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공기도입	23,432	21,807	21,807	31,464	9,657	44.3

자료: 해양경찰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101-300

2) 코드: 일반회계 3101-301

나. 분석의견

함정건조 사업과 항공기도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함정건조 사업은 내구연한 도래 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연계하여 정비계획 및 대체건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은 제4조에서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의 경우 20년, FRP선³⁾과 알루미늄선의 경우 15년으로 정하면서, 제5조에서 내구연한에 도래한 함정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4~2018년 동안 총 19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용 중인 100톤 경비정 4척, 형사기동정 4척, 예인정 2척과 고속단정 18대의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23억 1,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 중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를 받은 함정은 5척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청은 함정의 선령을 기준으로 대체건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선령과 선박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도 안전도 검사 결과 안전등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건조 계획이 안전도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다 면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함정

[2014~2018년 내구연한 도래 함정의 안전도 검사 결과]

연도	대상함정	선박 종류	선령	검사등급		
				선체	기관	전기
2014	1501함	강선	32년	4등급	4등급	4등급
2015	P-117정	FRP선	23년	4등급	4등급	4등급
	P-113정	FRP선	23년	5등급	5등급	5등급
2016	301함	강선	29년	4등급	4등급	4등급
	303함	강선	29년	5등급	4등급	4등급
	P-118정	FRP선	22년	4등급	4등급	4등급
	P-119정	FRP선	22년	4등급	3등급	3등급
	방제9호	강선	27년	5등급	5등급	4등급
	방제10호	강선	27년	4등급	4등급	4등급
	105정	강선	25년	5등급	4등급	4등급
2017	109정	강선	24년	5등급	4등급	4등급
	T-01정	강선	26년	5등급	5등급	4등급
	T-02정	강선	25년	5등급	5등급	4등급
	방제13호	강선	23년	5등급	4등급	4등급
	P-121정	알루미늄선	21년	5등급	4등급	4등급
	P-122정	알루미늄선	21년	5등급	4등급	4등급
2018	300함	강선	25년	5등급	4등급	4등급
	103정	강선	25년	4등급	4등급	4등급
	106정	강선	24년	5등급	4등급	4등급

주: 1. 검사 결과는 1~5등급으로 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2. 음영으로 표시한 함정은 2020년 예산안에서 대체건조 대상으로 반영된 함정이다.

자료: 해양경찰청

둘째, 항공기도입 사업은 대형헬기 1대 신규 도입 예산액 산출 시 2020년 기준 환율을 적용함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대형헬기 1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대형헬기의 연차별 예산투입 기준에 따라 1년차에는 예상가액 5,940만USD의 5%를 편성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의 원/달러 기준환율은 2019.3.29. 종가 환율인 1,190원/달러이나, 정부예산안은 2019년 대형헬기 도입 시 기준환율인 1,064원/달러를 적용하여 2020년 예산액을 산출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항공기도입 사업 연차사업비 편성 기준]

(단위: %)

대 상 항 공 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대형헬기	5	30	30	35
중형헬기, 노후헬기	15	20	30	35
탐재헬기, 터보프롭	5	25	35	35
고정익 훈련기	30	70	-	-

자료: 해양경찰청

[항공기도입 사업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대 상 항 공 기	산출내역
노후헬기 대체 1대(4년차)	7,000백만원 = 24,185백만원 × 1대 × 28.94%(잔여사업비)
대형헬기 1대(2년차)	21,277백만원 = \$5,940만 × 1대 × 1,190원/\$ × 30.1%
대형헬기 1대(1년차)	3,157백만원 = \$5,940만 × 1대 × 1,064원/\$ × 5%

자료: 해양경찰청

가. 현 황

유도선안전관리강화 사업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선령에 도달한 유선 또는 도선의 운항이 금지²⁾됨에 따라 노후 유·도선을 새로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조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율의 2.5%p를 이차보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8억 1,4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내수면 유·도선에 대한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관리는 해양경찰청 소관이다.

[2020년도 유도선안전관리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유도선안전관리강화	0	0	0	814	814	순증

자료: 해양경찰청

[해수면 유·도선 현황]

(단위: 척)

구 분	유·도선 현황			선령 현황		
	계	유 선	도 선	20년 미만	20~25년	25년 초과
계	338	242	96	198	68	72

자료: 해양경찰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002-303

2) 운항 가능한 선령은 원칙적으로 강선·알루미늄선의 경우 20년, 목선·RFP선의 경우 15년으로 하
되 안전검사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나. 분석의견

유도선안전관리강화 사업은 지원대상, 조건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2020년 대체건조 계획에 따르면 선박 규모를 11톤급에서 50톤급으로 대체건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9월말 현재 대체건조 함정의 규모와 용자한도 등에 대한 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상환기간은 10~15년 가량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과 선사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용자 및 지원조건의 주요사항이 조속히 확정되어 예산심사 시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용자를 희망하는 선사의 신용도 및 담보제공능력에 따라 대출이 미승인되는 경우, 건조비가 소액으로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 요구된다.

[2020년 유·도선 대체건조계획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체 건조 선박							
	선박제원					대체건조 계획		
	선명	건조연도(선령)	선질	톤수	선종	톤수	건조비	금융기관 융자액
인천서	로OO	1969(48년)	강선	52	유선	50	1,000	800
	반OOO	1981(37년)	강선	24	유선	50	1,000	800
	덕OO	1988(30년)	강선	26	유선	50	1,000	800
	마OOO	1980(38년)	FRP	11	유선	50	1,000	800
	경OO	1990(28년)	강선	19	유선	30	600	480
	진OOO	1986(32년)	강선	32	유선	50	1,000	800
	라OO	1990(28년)	강선	57	유선	50	1,000	800
	수OO	1991(27년)	강선	25	유선	50	1,000	800
	자OOO	1991(27년)	강선	52	유선	50	1,000	800
	킹OOO	1991(27년)	FRP	36	유선	50	1,000	800
	경OOO	1993(25년)	강선	21	유선	50	1,000	800
	동OO	1982(36년)	FRP	39	유선	19	500	400
	푸OOOO	1987(32년)	강선	21	유선	21	500	400
	푸OOOO	1993(26년)	FRP	20	유선	20	500	400
	글OOOO	1992(27년)	강선	80	유선	80	16,000	12,800
동해서	8OOOO	1989(30년)	강선	100	도선	100	1,500	1,200
여수서	나OO	1974(44년)	강선	141	유선	180	3,000	2,400
	피OO	1986(33년)	FRP	1	유선	1.5	30	20
	배OO	1987(32년)	FRP	1	유선	1.5	30	20
	아OOO	1987(32년)	FRP	1	유선	1.5	30	20
	슈OOO	1986(33년)	FRP	1	유선	1.5	30	20
	고OOO	1987(32년)	FRP	1	유선	1.5	30	20
통영서	관OO	1990(28년)	목선	29	유선	29	6,000	4,800
	송OOO	1992(26년)	강선	96	유선	100	2,000	1,600

자료: 해양경찰청

2020년 예산안에는 예상 용자액 325.8억원의 2.5%인 8.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출신청, 금융기관의 심사, 예산배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0년 중 실제 용자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유사사업의 총 용자액 대비 평균잔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유·도선 대체건조 지원 계획]

(단위: 척)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연도(누적)	24(24)	35(59)	38(97)	16(113)	9(122)

자료: 해양경찰청

[유도선안전관리강화 사업 2020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척, 백만원)

선종	척수	건조비	용자액 (건조비의 약 80%)	소요예산액
유선	23	39,250	31,380	784.5
도선	1	1,500	1,200	30
합계	24	40,750	32,580	814.5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¹⁾은 구조장비 확보, 수색구조 합동훈련 실시, 수색구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색구조역량강화	5,350	5,065	5,065	8,627	3,562	70.3
구조역량강화	1,059	1,247	1,247	4,145	2,898	232.4

자료: 해양경찰청

나. 분석의견

중·소형 함정 및 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연안사고 초동대응 구조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함정·파출소별 필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대상을 선발하고, 전보 등에 따라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안사고 초동대응 구조훈련 사업은 전문 잠수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중·소형 함정 172척과 파출소 70개소²⁾에 근무하는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안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구조장비를 지급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함정 172척과 파출소 70개소에 잠수장비(단가 520만원) 각 2세트를 지급하기 위한 25억 1,700만원과 경찰관 764명³⁾에 대한 교육·훈련비 3억 4,400만원⁴⁾이 편성되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001-301

2) 전체 파출소 95개소 중 잠수 전문인력이 배치된 구조거점 파출소 25개소를 제외한 수치이다.

3) 함정 172척 × 2명 + 파출소 70개소 × 2명 × 3교대 = 764명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 분	구 성	대응 시간	주요 임무
현장요원 초동대응	- 파출소(70개소) 함정(중·소형172척) - 일반 경찰관	10분 이내	차량 침수, 단순 전복 사고 등 5m이내 사고 시 초동 조치
구조거점 파출소	- 구조거점 파출소(25개소) - 전문 잠수요원	30분 이내	연안의 18m이내 초기잠수 필요한 사고 대응
구조대 ·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 구조대(16개소) 중앙해양특수구조단(3개소) - 전문 잠수요원	1시간 이내	연안과 내해의 40m이내 전 문 잠수구조와 전 해역의 대형·특수 해난사고 대응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19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835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⁵⁾하였는데, 이 중 파출소 근무 인원은 372명으로 최소 필요 인력인 420명(2명 × 3교대)에 미치지 못하여 2020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상 전보주기(현장 2년, 非현장 4년)을 고려할 때 매년 교육수료자의 1/3 가량이 전보 조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함정·파출소별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교육대상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기 수료자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을 적절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중·소형 함정	파출소	합 계
동해청	81	77	158
남해청	84	107	191
서해청	116	87	203
제주청	91	33	124
중부청	91	68	159
합 계	463	372	835

주: 교육·훈련 실시 당시 보직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4) $764명 \times 5일 \times 9만원(일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 = 3억 4,400만원$

5) 2019년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인재선발양성지원” 사업 예산에서 국내교육여비 9,940만원을 지급하였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하 정 희 예산분석관
남 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윤 혜 정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20-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